



2010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Suggestions to Support a Social Economy in Seoul

신 경 희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Suggestions to Support a Social Economy in Seoul

2010

Ⅱ 연구진 Ⅱ

연구책임 신 경 희 • 복지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정 순 주 • 복지문화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부처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육성정책의 통합·연계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2000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2007년), 서울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2010년),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2010년) 사업 등을 비롯해, 최근 정부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강조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
 - 정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들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의 지원 전략 및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대상 범위

-이 연구의 대상 사업체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며, 이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를 사용함.

○연구 내용 및 방법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정의 및 강조점을 문헌연구, 관련법 조사, 관련 행정부서의 내부자료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정리·분석하였음.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사업체 유형별 행정관리 및 지원 체계, 정책지원사업 현황 분석의 경우, 중앙부처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내부자료조사, 관련법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자료 수집과 재분석을 하였음.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생활협동조합·마을기업 운영자와 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관련자 11명을 심층면접조사하였음.

-정책 제안과 관련해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참여자는 총 14명임.

3.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정의 및 강조점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정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은 200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조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고, 구성원의 1/3 이상이 수급자로 구성되어야 함. 자활공동체는 사업 참여를 통한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형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를 원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고 있음.

○사업체 유형별 차이점과 강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관련법에 의한 법적 지위가 있으나, 마을기업은 현재 법적 지위가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은 관련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법적 지위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마을기업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조직형태는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임.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활이며, 마을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지역사회 기여라고 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사업체 유형별 법적 지위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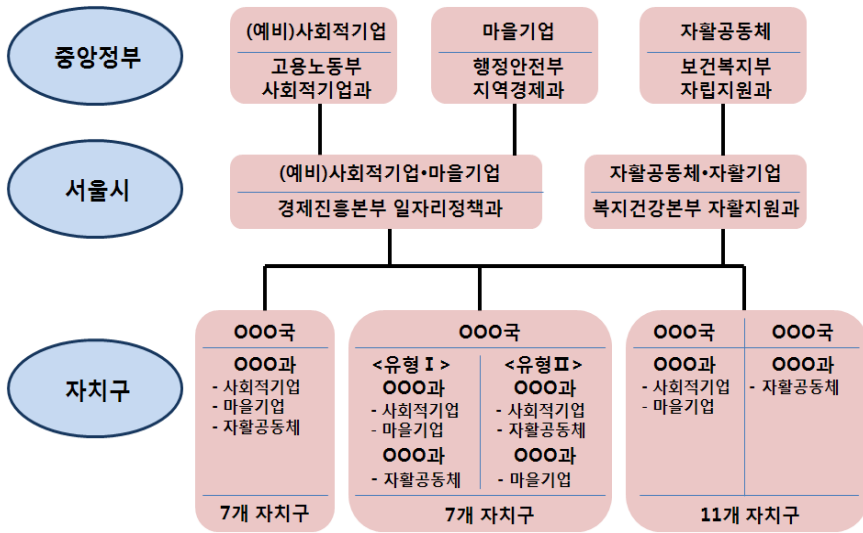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정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법인 필수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년)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 시장 지정 - 구청장 지정	- 법인 필수	
자활공동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 구청장 인정	-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 형태 필수	-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자활기업	- 서울시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 시장 인증	- 자활공동체와 동일	-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검토 중	- 서울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선정	-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체 -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형태를 요하지 않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장 인가	- 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300명 이상, 조합원 출자금 납입 총액 3천만원 이상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4. 행정지원 및 업무 추진 체계

○ 행정부서 및 지원기관

-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자활공동체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함.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가 (예비)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가 자활공동체 업무를 담당함.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자치구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한 과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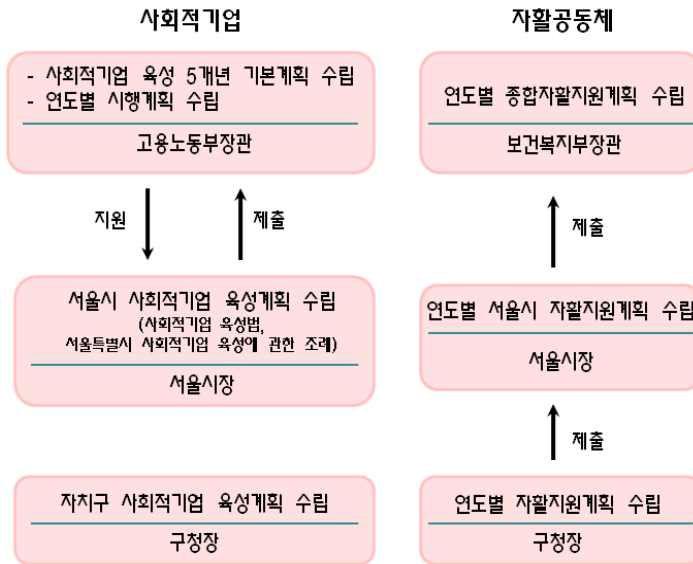
자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5월 9일.

<그림 1>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서

○ 법정계획 수립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자치구의 계획수립과 지원조항은 없음(<그림 2> 참조).

- 자활공동체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의 연도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활공동체 육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그림 2〉 사업체 유형별 법정계획 수립 체계

○ 사업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이외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심사업무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자치구가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마을기업 발굴, 심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활공동체의 경우 구청장이 자활공동체 인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함.

5.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0명의 근로자와 3인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연간 7천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체당 최대 50명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1년차에는 인건비 100%, 2년차에는 6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제1~4차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업체당 평균 1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음.
- 사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011년 5월 현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179개 사업체가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였고, 이중 65개 사업체가 평균 12,397천원을 지원받았음.

○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연도 5,000만원, 2차 연도 3,000만원으로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46개 사업체는 평균 42,721천원을 지원받음.

○ 자활공동체

-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07년~2010년 동안 사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활공동체는 없음.
- 2010년 21개 자활공동체가 사업체당 평균 4,962만원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음. 2010년 163개 자활공동체에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수는 109명임.

6.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과 특성

○ 사회적 경제 사업체 인증 및 지정 현황

-서울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가 114개(2010년 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가 309개(2010년 말)가 있음.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46개(2011년 3월),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은 사업체는 163개(2010년 말), 생활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사업체는 50개(2011년 3월)임.

○ 사회적 경제 사업체 자치구별 분포

-사회적 경제 사업체는 마포구(64개), 종로구(52개), 영등포구(47개), 강남구(41개), 강서구(40개) 순으로 많은 반면, 동대문구(9개), 금천구(12개), 성동구(13개) 도봉구(15개) 순으로 적음.

- (예비)사회적기업은 마포구(50개), 종로구(45개), 영등포구(38개), 강남구(34개) 순으로 많음. 자활공동체는 노원구(19개), 강서구(14개), 구로구(12개), 관악구(12개) 순임. 마을기업은 동대문구와 강남구의 2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23개 자치구에 1~4개씩 분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마포구에 5개로 가장 많고,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4개씩 분포하고 있음.

○ 업종

-사회적기업 업종 분포는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19.3%로 가장 많고, 이어 외식·식품 제조판매 사업체 14.0%, 간병·생활보조 분야 사업체 11.4% 순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도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23.8%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교육분야 사업체 18.7%, 외식·식품 제조 판매 분야 사업체 13.9% 순임.

-마을기업은 외식·식품 제조판매 사업체가 39.1%로 가장 많고, 재활용

환경 사업체 15.2%, 제조업 15.2%임.

- 자활공동체는 청소·차량관리서비스 사업체가 25.8%로 가장 많고, 이어 간병·생활보조서비스 사업체 18.7%, 외식·식품제조판매업 15.5% 순임.
- 생활협동조합은 유통 판매업이 56.0%, 보건의료서비스가 44.0%임.

○근로자

-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8.9명, 마을기업 13.8명, 자활공동체 6.9명임.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4대 보험가입 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임. 취약계층 유형은 중고령자가 35.2%로 가장 많고, 이어 장애인 21.2%, 경력단절 여성 12.9%, 저소득층 11.1% 순임. 자활공동체는 구성원의 40.8%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59.2%가 차상위계층 등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 전환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제1~3차) 중에서 21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함. 2010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9개 사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체가 1개임. 자활공동체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10개임. 생활협동조합에서 파생된 마을기업이 2개임. 지역자활센터에서 파생된 사회적기업은 7개임.

II. 정책 제안

1. 정책방향

- 사회적 경제 사업체 양적 성장을 위한 발굴 및 지원정책에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및 관리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

함.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계 · 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지역사회 연계 · 연대사업으로 호혜 · 선순환 지역경제활동 촉진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

○ 사업체 간 연계 · 연합사업으로 상호부조 및 규모의 경제 창출

– 외식 · 식품 제조판매 업종은 식재료 공동구매, 집수리 및 시설 관리 분야 업종은 공동제고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체당 비용절감이 가능함. 서울시는 사업체의 비용 절감 및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사업을 공모하고 타당성이 있는 네트워크사업에 예산을 지원함.
– 사회적 경제 사업체 내부의 물품 · 서비스 상호판매 및 교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사업체 내부 교환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발신의 매개역할을 하고 내부 교환경제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사업체 역량 강화

–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 대상 경영교육에 마을기업, 자활공동

체, 생활협동조합 관리자를 포함함. 그리고 근로자 대상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과 순회교육 지원사업을 함.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간지원기관으로 적절히 활용함.

○마케팅 및 운영 환경 지원

-서울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가능한 물품 및 서비스 유형과 유형별 구매 가능 총량을 조사·측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 확보임.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공에서 발간하는 매체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함.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또는 업종별 등의 협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서울시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를 지원함.

4. 정보공유·교류 활성화 지원

○공공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의 교류촉진 사업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민간단체와의 교류수준이 미약한 편임.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회적 경제 지역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단체와 세미나 공동 주최 등의 방식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활성화

-2011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적기업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웹사이트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로 확대 발전시킴.

5. 통합관리 행정체계 구축

○ 사업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사업체별 프로파일 DB를 구축함. 사업체 프로파일에 수록될 정보는 공공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 경영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시에 활용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 체계를 개발함.

○ 공공지원 원칙 및 지침 작성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사업체 대표자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경제 사업체 공공지원 통합지침서를 작성함.

○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사업비 예산을 지원함.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 재정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자치구의 통합관리 행정체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1개 과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행정조직을 갖춘. 그리고 지역경제 담당과와 사회적 경제 담당과를 한 국에 배치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제2장 사회적 경제 개념과 사업체 유형	9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지역사회	9
1. 국외	9
2. 국내	10
3.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12
제2절 사업체 유형별 정의와 강조점	16
1. 사업체 유형별 정의 및 요건	16
2. 사업체 유형별 강조점과 차이	24
제3장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31
제1절 행정지원체계	31
1. 행정부서	31
2. 지원기관	33
3. 업무 추진체계	37
제2절 정책과 지원사업	42
1. (예비)사회적기업	42
2. 자활공동체	52
3. 마을기업	59
제3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62

제4장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과 특성	71
제1절 사업체 현황	71
1. 규모	71
2. 자치구별 사업체 현황	74
제2절 사업체 유형별 특성	78
1. 조직형태	78
2. 사업체 유형별 전환 과정	80
3. 업종	82
4. 근로자	84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연대 사례	87
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공동체	87
2. 강원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90
3.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협력사례	91
제4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94
제5장 정책 제언	103
1. 정책방향	103
2. 전략과 추진 방안	104
참고문헌	121
영문요약	127

표 목 차

〈표 2-1〉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예	12
〈표 2-2〉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의 개념	14
〈표 2-3〉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사기준	20
〈표 2-4〉 마을기업 선정 심사기준	23
〈표 2-5〉 사업체 유형별 법적 지위와 조직 형태	25
〈표 2-6〉 사업체 유형별 강조점과 차이	28
〈표 3-1〉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기업 업무 분담	42
〈표 3-2〉 서울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	46
〈표 3-3〉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현황	47
〈표 3-4〉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	49
〈표 3-5〉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설립 지원 사례	52
〈표 3-6〉 자치구별 자활기금 규모와 집행액	53
〈표 3-7〉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우선임대지원 현황	55
〈표 3-8〉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현황	56
〈표 3-9〉 자치구의 자활공동체 위탁사업 현황	57
〈표 3-10〉 자치구의 자활공동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현황	58
〈표 3-11〉 자치구별 마을기업 지원사항	61
〈표 4-1〉 사업체 유형별 신청 및 인증·지정 현황	73
〈표 4-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지정·지정 포기 현황	74
〈표 4-3〉 사업체 유형별 자치구 분포 현황	76
〈표 4-4〉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78
〈표 4-5〉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79
〈표 4-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법인 조직형태	79
〈표 4-7〉 마을기업의 조직형태	80

〈표 4-8〉 사업체 유형별 업종 현황	83
〈표 4-9〉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85
〈표 4-10〉 사업체별 고용 규모	85
〈표 4-11〉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	87

그림목차

〈그림 2-1〉 사업체 유형별 사회적 목적 비중	27
〈그림 2-2〉 사업체 유형별 지역사회 관련 수준	27
〈그림 3-1〉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서	32
〈그림 3-2〉 사업체 유형별 지원기관 현황	36
〈그림 3-3〉 사업체 유형별 법정계획 수립 체계	39
〈그림 3-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업무 추진체계	40
〈그림 3-5〉 자활공동체 인정 행정체계	40
〈그림 3-6〉 자활공동체 지원 행정체계	41
〈그림 3-7〉 마을기업 선정과 관리체계	42
〈그림 3-8〉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의 예산규모	48
〈그림 3-9〉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	49
〈그림 3-10〉 자치구별 마을기업 예산	60
〈그림 4-1〉 사업체 유형별 자치구 분포 ((예비)사회적기업)	77
〈그림 4-2〉 사업체 유형별 자치구 분포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77
〈그림 4-3〉 사업체 유형별 전환 과정	81
〈그림 4-4〉 마포구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현황	89
〈그림 4-5〉 마포구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업종별 현황	89
〈그림 4-6〉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90
〈그림 4-7〉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마을기업의 제휴	93
〈그림 5-1〉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지원업무 행정체계(안)	117

제1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007년 후반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정책이 시작되었고,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서울형 예비사회기업 지정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식경제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정 및 지원사업을 하였다¹⁾.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부처별로 추진해온 이들 사업체 육성정책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정부 일자리사업에 새로운 개념 적용과 명칭 변경을 통해 발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전략이 강조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부처마다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

1)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2010년 후반기에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10개 사업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정을 받았고, 서울 지역에는 1개 사업체가 지정을 받았음. 2011년 5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은 종료된 상황임.

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에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1년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기업 인증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자치구도 2009년 하반기 들어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다(2011년 5월 기준).

-이처럼 중앙부처별, 그리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활공동체 등의 여러 가지 혼재된 명칭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중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부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들 사업체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에서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 사업체의 실태와 행정지원체계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들 사업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의 육성 방향 및 지원전략,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범위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여타 사업체와 달리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²⁾. 생활협동조합은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사업체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연구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의 내용은 제1장 연구개요를 포함해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업체 유형별 정의 및 강조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연구, 관련법 조사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내부자료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부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내부자료조사 및 관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런법 조사 등의 연구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행정관리 및 지원체계, 그리고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의 현황과 특성을 사업체 수, 자치구별 현황, 업종, 조직형태, 사업체 유형별 전환과정, 근로자 규모와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체 간 연대 사례 소개와 분석을 하였다. 제4장은 문헌연구, 행정내부자료조사와 관련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운영자 7명,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여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인,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지역자활센터 관장 및 관계자 2인, 마을기업과 예비형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인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11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정책방향, 추진전략, 추진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실시하였다. 제1차 간담회는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관계자 3인이 참여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체 대표자 2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체 대표자 1인, 지역자활센터 관장 1인,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자 2인 등 총 6명이 참여하였다. 제3차 전문가회의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팀장 1인을 포함해 관련 전문가 5명이 참여하였다.

제2장 사회적 경제 개념과 사업체 유형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지역사회

제2절 사업체 유형별 정의와 강조점

제 2 장

사회적 경제 개념과 사업체 유형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지역사회

1. 국외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economie sociale)라는 용어는 1900년경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8-1932)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는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일정 정도 결사의 자유가 가능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으로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mutual insurance), 민간단체(association)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신명호, 2009).
- 유럽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복지국가 개념 쇠퇴로 정부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989년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990년대 들어 조사 연구 사업을 지원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엄형식, 2007).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대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 드푸르니는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과 비영리 부문이 강조되는 미국의 전통을 결합하는 용어로, 새로운 집합적 기업가 정신으로 창출된 새로운 조직, 재창출된 조직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즉 사회적기업은 유럽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등의 혁신적 변형, 그리고 역동적인 기업적 정신으로 비영리 시민단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재창조된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Defourny, 2007).

-나라별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1996년 유럽의 사회경제연구네트워크인 EMES는 경제적 기준 4가지, 사회적 기준 5가지를 통해 사회적기업(경제)에 대한 일종의 Ideal Type 방식의 정의를 하였다(<표 2-2> 참조).

2.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에 앞서 사회적 일자리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제3섹터 부문 일자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란 용어가 통용되다가 2000년 12월 국내에서 개최된 '사회적 일자리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노대명 외, 2005). 2003년 하반기부터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 일자

3) 유럽에서는 1994년 벨기에 보두앵 국왕재단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엄형식, 2007).

리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 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정의하였다(노동부, 2004).

-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용어이자 정책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업체만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이란 용어 사용 자체를 한정시키는 측면이 있다⁴⁾. 즉 저소득층 공동창업 사업체인 자활공동체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전형이지만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 한해서만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용어 사용의 제약과 의미 전달에 한계를 느낀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사회적기업을 포괄하고 확대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 신명호(2009)는 우리나라 말에서 경제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주체로 포함된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경제에 생산 조직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운동처럼 소비나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명호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

4) 사회적기업이 법적 용어로 그 개념이 한정되자, 2008년 6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해 온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명칭을 변경함.

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예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	
생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로컬푸드 운동 네트워크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다 운동단체 등	-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	-

자료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5.

3.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적이면서도 기업가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EMES가 유럽 15개국의 사회적 경제를 조사 연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준 5가지 중에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준이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산한다는 것, 둘째,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이해나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나 시민활동의 산물이므로 시민주도의 참여적 특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Defourny, 2007).
-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지역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EMES는 유럽 사회적기업의 대표적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노동통합형, 지역개발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Defourny, 2007), 이런 사업은 그 속성상 지역사회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기업 업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육,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는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 취약계층의 훈련과 직업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직주근접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비용 대비 사업 효과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개발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빈곤문제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를 벗어나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도 생기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폭 넓은 정의를 채택한 영국 정부⁵⁾는 2005년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으로 지역공동체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법제화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정책지향점이 지역사회 기반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2-2>는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의 Ideal Type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세 개념에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사업성, 시민성,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5)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 목표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최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조직이나 지역공동체에 원칙적으로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체로 정의하고 있음(Cabinet Office, 2006).

〈표 2-2〉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의 개념

<p>사회적기업 (EMES)</p>	<p>① 사업성 :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판매 ② 자율성 : 정부,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율성 확보 ③ 경제적 위험 감수 : 공공기관과 달리 구성원은 경제적 위험 감수 ④ 유급근로자 :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최소한의 유급근로자 필요 ⑤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⑥ 시민성 : 시민 주도의 참여적 특성 보존 ⑦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1인 1투표권이 원칙 ⑧ 이해당사자 참여성 : 근로자, 이용자(소비자)의 기업 활동 참여와 영향 ⑨ 제한적 이윤배분 : 제한된 범위 내 이익 분배,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음</p>
<p>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사 아쓰시 외, 2007)</p>	<p>① 사업성 : 독자사업에 의해 수입 확보, 활동의 자립성 확보 ② 지역성 :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 ③ 지역공헌성 : 지역문제 해결, 개인 이익의 확보만이 아닌 고용 확대로 연계하는 등의 지역과제 해결에 공헌 ④ 시민성 : 지역주민 등의 시민 부문이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p>
<p>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⁶⁾)</p>	<p>① 가입의 자발성과 개방성 ② 민주적 운영, 1인 1투표권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자립성 ⑤ 교육, 훈련, 홍보와 정보의 제공 ⑥ 협동조합 간 협동 ⑦ 지역사회 기여</p>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기업 정의⁷⁾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으나, 2010년 6월 8일 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구가 첨가되었다. 사회적기업 유형에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이외에 지역사회공헌형이 추가되었다.
- 고용노동부 주도하에 2007년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6)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만든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음 (자료 : www.ica.coop/ica_rules.pdf).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2007년 제정)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임.

였다. 이어 2009년 7월 용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2011년 5월에는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발전 간의 상호관련성을 행정부 및 의회가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란 관점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2010년 하반기 들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주체⁸⁾로 기초자치단체가 강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7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기업⁹⁾(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식경제부도 2010년 하반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들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의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자활공동체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보고, 사업운영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 도입과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¹⁰⁾(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이 또한 사회

8) 2010년 6월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강조됨.

9) 행정안전부는 처음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2011년부터 마을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함.

10)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사업 추진방향에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를 강조함. 자활

적 경제에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성명’에서 21세기 협동조합이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를 첨가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폭넓은 관점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본다(염찬희, 2010).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 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첨가하였다.
- 이상에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자활공동체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협동조합 등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형성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들이 최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사업체 유형별 정의와 강조점

1. 사업체 유형별 정의 및 요건

1) 사회적기업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공동체 참여자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나, 사업실시지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이는 자활공동체의 지역사회 기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1).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③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¹¹⁾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11)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정관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가)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다. 이외에 사회적기업의 지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이윤 사용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때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

○정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정 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심사기준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사용하는 심사기준은 <표 2-3>과 같다. 이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표 2-3>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사기준

기준	세부항목
사업 내용의 우수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 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 주체의 건실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관의 지원수준(기술, 재정 등)

〈표 계속〉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사기준

기준	세부항목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구조, 사업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 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사회적기업은 평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분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정성 - 수익금의 사용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훈련 계획의 충실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3) 자활공동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의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자활공동체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인정 요건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 자활공동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어야 한다.
- 모든 구성원에게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 자활공동체 근로일수가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해야 한다.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전환 시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동체 전환 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한다.

4) 자활기업

- 2011년 3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자활기업의 인증)에서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증받은 자활공동체는 ‘서울시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1년 5월 현재 자활기업 인증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비 중이다.

5)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의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
-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은 2010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12)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 심사기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표 2-4>와 같다¹⁴⁾.

<표 2-4> 마을기업 선정 심사기준

기준	항목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공헌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단체의 재정 자립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 예상목표 및 실현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여부, 지원 이후 자립 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 시 중요 자료로 활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목적과 정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를 원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설립인가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가 있는 30인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기준은 조합설립 동의자가 300명 이상,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4)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둘째, 조합원 의결권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평등하여야 하고, 셋째,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¹⁵⁾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2. 사업체 유형별 강조점과 차이

1) 법적 지위 및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표

15) 연합회는 생활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는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회를 말함.

2-5> 참조).

-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서울시장의 인증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자활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처럼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및 조합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마을기업은 2011년 5월 현재 법이나 조례로 규정된 실체는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칭)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¹⁶⁾.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처럼 조직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대상단체를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로 정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다.

〈표 2-5〉 사업체 유형별 법적 지위와 조직 형태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정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법인 필수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09년)	- 시장 지정	- 법인 필수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 구청장 지정	
자활공동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 구청장 인정	-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 형태 필수
자활기업	- 서울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1년)	- 시장 인증	- 자활공동체와 동일
마을기업	-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 검토 중임	- 서울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선정	-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체 -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형태를 요하지 않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장 인가	- 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300명 이상, 조합원 출자금 납입총액 3천만원 이상

16)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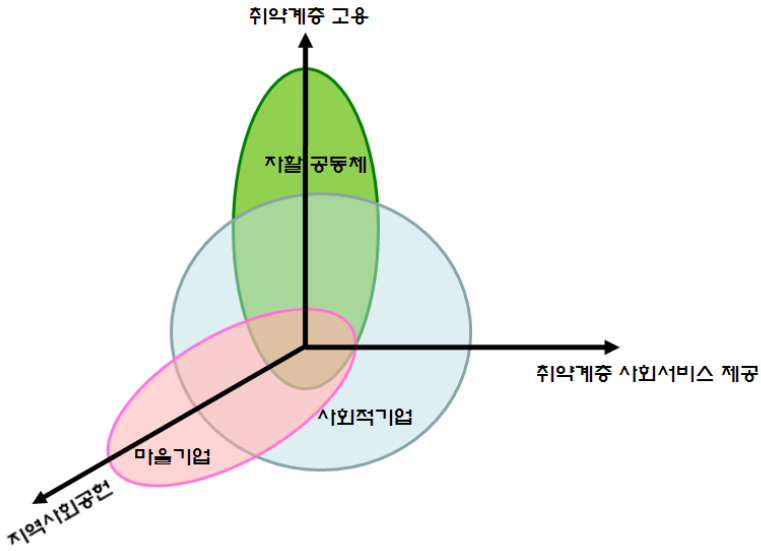
-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해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생활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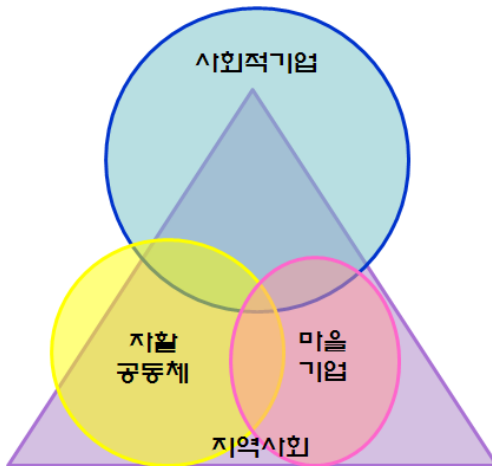
-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며, 그 외 지역사회 공헌도 있다.
- 자활공동체(자활기업)는 사회적 목적이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이며¹⁷⁾,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으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이라 할 수 있다.
- 마을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으로 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라 할 수 있다.
-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사업체 유형별로 강조하는 사회적 목적의 비중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업체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의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지역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반면

17)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자활사업안내』.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 사업체 유형별 사회적 목적 비중



〈그림 2-2〉 사업체 유형별 지역사회 관련 수준

〈표 2-6〉 사업체 유형별 강조점과 차이

유형	강조점과 차이
(예비)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강조 - 지역사회공헌형이 있으나 활동 영역과 목적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기업도 존재 - 취약계층 범위가 자활공동체에 비해 폭이 넓음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근로자 요건에 대한 제약이 없음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 강조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전형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 주도 강조 -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소비·복지·생활문화 향상 강조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함

■ 소결

- 정부부처별 정책지원사업으로 2000년 자활공동체, 2007년 사회적기업,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최근 2~3년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업체의 명칭이 다르기는 하나,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체의 목적 및 운영 원칙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운영 원칙의 공통점으로는 사업성, 시민성, 지역성을 들 수 있다.
- 중앙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지원정책이 추진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체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성, 시민성이 반영된 지원정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들어 정부정책이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역사회 기반을 중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3장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 제1절 행정지원체계
- 제2절 정책과 지원사업
- 제3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제 3 장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제1절 행정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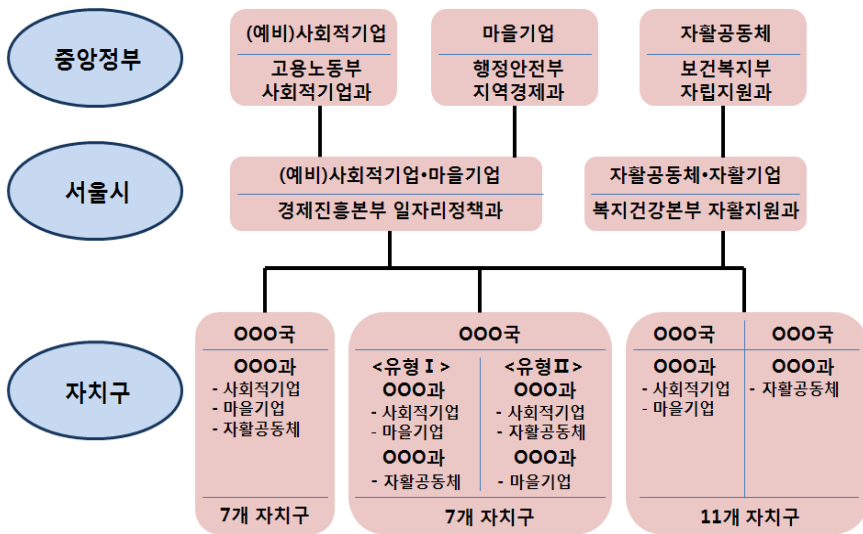
1. 행정부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¹⁸⁾, 자활공동체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 있다.
- 서울시 차원에서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전담하며, 자활공동체는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가 주무부서이다.
- 25개 자치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체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 개 과에서 (예비)사

1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의 업무내용은 ①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②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개정, ④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⑥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교류 지원, ⑦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⑨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⑩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⑪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⑫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임(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업무 모두를 관장하는 체제이다.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의 7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소속국은 같으나, 2개 과에서 관리하는 체제이다.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6개 자치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같은 과에서 담당하며, 자활공동체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진구는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를 같은 과에서 관리하며, 마을기업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셋째, 두 개 국 하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를 관할하는 체제이다.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의 11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3-1>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5월 9일.

<그림 3-1>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서

2. 지원기관

1)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년 2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국 단위의 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②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구축 운영지원, ④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는 14개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5개 민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한국경영·기술컨설팅트협회’의 2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2011년에는 ‘사람사랑’ 1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지원기관 역할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②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③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④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⑤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⑥ 지역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⑦ (예비)사회적기

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⑧ 기타(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하는 업무 혹은 상황변화에 따라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추가되는 업무 수행 등이 그것이다(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2) 자활공동체

○ 중앙자활센터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자활센터 설립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8년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①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②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③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④ 자활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 ⑤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 서울시 광역자활센터

-서울시는 2010년 12월에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위탁하여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사업단)의 설립과정에서 경영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지역 내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연계를 통해 경영 진단 및 자문 등 지원
-저소득층 개인 창업 및 자활공동체 지원

- ②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취업 지원
 -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직 빈곤층 중심의 DB 등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성
- ③ 지역 중소기업·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일자리 연계
- ④ 교육훈련사업
 -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전문 창업지원 인력 육성 등 전문교육 실시
- ⑤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⑥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마이크로크레딧 집행 등¹⁹⁾
 -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제시한 센터 역할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⁰⁾. ① 광역사업단·광역공동체·사회적기업 육성지원, ② 취업 지원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③ 자활사업 참여자(CEO, 실무자, 참여 주민) 교육과 훈련, 사업별 전문교육, ④ 자활생산물 홍보·판매, ⑤ 자활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연계 등이 그것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22개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²¹⁾.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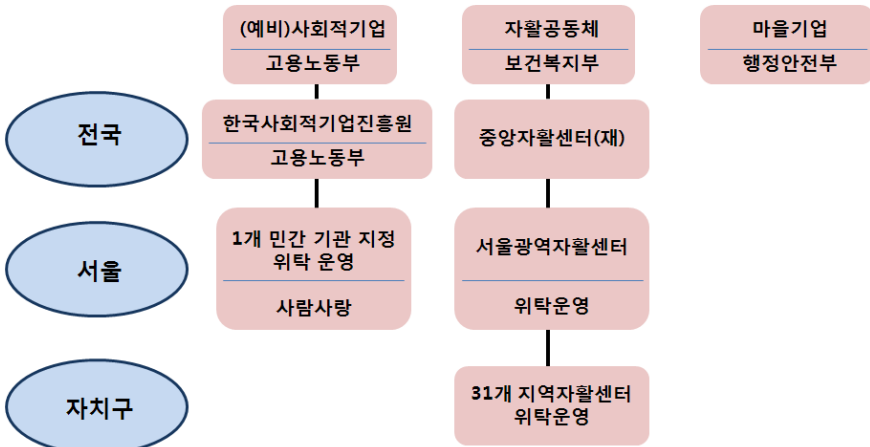
19) 보건복지부, 2011, 「2011 자활사업안내」.

20) 자료 : 서울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www.sjahwal.or.kr).

21) 서울광역자활센터, 2010, 「2011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계획」.

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상담·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⑤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⑥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²²⁾.
- 서울시에는 2011년 5월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강서구(3개), 관악구(3개), 노원구(3개), 구로(2개)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는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 사업체 유형별 지원기관 현황

3)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마을기업 사업을 시작하였고 근거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처럼 제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으로 ①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②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정도를 정하고 있음.

도적으로 정해진 지원기관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마을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지원조직 체계구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자문단을 운영하고, 둘째, 시·도(광역시)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선정·활용해 시·도 단위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하며, 셋째 시·군·구(기초)는 지자체, 대학교수, 회계사, 지역상공회의소,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3. 업무 추진체계

1) 계획 수립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²³⁾’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동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3)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②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사회적기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서도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²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21곳이다²⁵⁾. 용산구, 마포구, 중랑구, 종로구, 송파구, 동작구, 강남구 등의 21개 자치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시 조례에서 제시한 사항과 유사하다.

○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처럼 법이나 조례로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자활공동체 육성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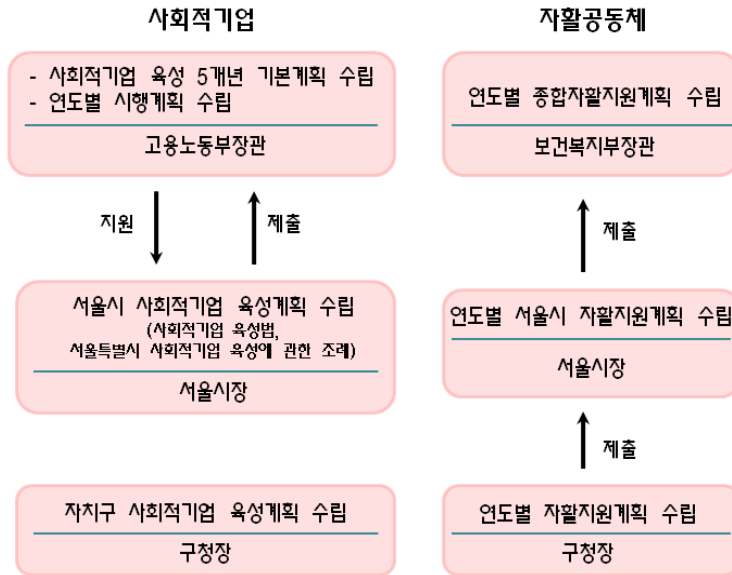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²⁶⁾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

24)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②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25) 자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5월 25일.

26) 기초자치단체장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음.

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계획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자활지원 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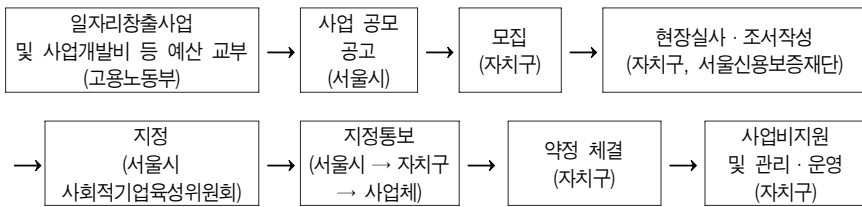
〈그림 3-3〉 사업체 유형별 법정계획 수립 체계

2) 사업추진 체계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이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심사업무와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사업을 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하면, 자치구는 사업체 신청을 받고, 담당공무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컨설팅트가 관내 신청 사업체 실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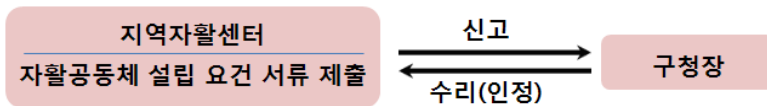
이후 서울시 사회적기업실무분과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체의 사업계획서와 자치구의 검토의견서, 사업체 대표자 면담을 토대로 1차 심사를 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자치구는 사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 자치구가 지정 사업체와 약정 체결을 하며, 사업비 지급과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업무 추진체계

○ 자활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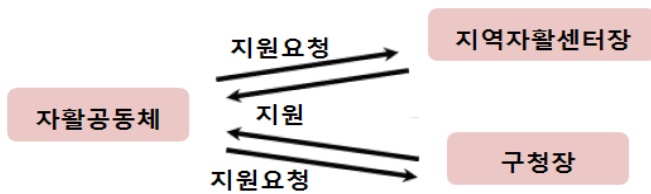
-지역자활센터는 성립요건을 갖춘 자활공동체에 대한 서류를²⁷⁾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성립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수리함으로써 자활공동체로 인정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자활공동체 인정서를 발급하여 지자체 사업 우선 위탁 시 증빙서류로 활용한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자활공동체 인정 행정체계

27) 서류는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등임(자료: 보건복지부, 2011, 『2011 자활사업안내』).

-자활공동체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은 자활공동체의 지원 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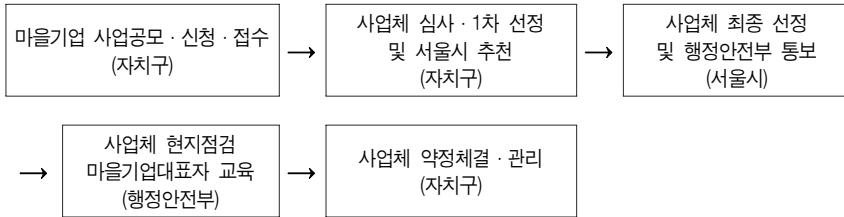
(그림 3-6) 자활공동체 지원 행정체계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자치구에서 공모를 하고 신청사업체 접수를 받고 있다. 자치구는 신청사업체에 대한 현지조사와 신청사업체 1차 심사를 한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마을기업 심사를 하였다.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²⁸⁾, 19개 자치구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별도의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치구는 1차 심사결과와 사업체 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1차 심사결과, 사업체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마을기업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치구는 선정된 사업체와 사업약정 체결과 사업관리를 하게 된다.

28)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그림 3-7〉 마을기업 선정과 관리체계

〈표 3-1〉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기업 업무 분담

구분	역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자체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전문교육 과정(지방행정연수원) 신설 등 지자체 리더 양성 - 자치단체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 자치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 심사 후 행정안전부 통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지원예산 및 단체 수 결정 - 경영컨설팅 및 민간교육기관 선정 등 - 자치구의 사업추진 점검 및 행정안전부 보고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단체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 마을기업 육성 협약 체결 -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감독 - 선정된 단체가 소속된 동에 단체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튜터(기존 마을기업, 대학교, 컨설팅기관)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선정된 단체,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매월 보고

자료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제2절 정책과 지원사업

1.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부지 구입비·시설비 지원·용자, 국공유지 임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 지원이 있다. 간접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가 있다.

1) 고용노동부

○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심사를 통과하면 최장 3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당 최대 근로자 30명, 전문인력 3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98만원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원을 한다. 1년차에는 인건비의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로, 연차별로 인건비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인건비는 기업당 3명 범위 내에서 1인당 15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연차별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한해 2010년부터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 기술 개발 등의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연간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국비 80%, 지방비 20%로 매칭)를 배분하고 있다.

○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의 컨설팅을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은 연간 10~20백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며, 3년간 총 20~30백만원의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며, 3년간 총 5백만원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사회적기업가나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 2010년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 참여자 수는 총 433명이다.

○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개설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학위과정 및 트랙,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과정 등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6개 대학이 지원받았고, 2010년에는 17개 대학이 지원받았다.

○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및 수강생 장학금 지원

- 2009년부터 시행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09년에 34명(18,570천원), 2010년에는 35명이 지원을 받았다.

2) 서울시

○ 인건비 지원

- 제1~4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09개에 대해 총 3,715명의 인건비 지원을 하였고, 인건비 지원액은 총 179억 6,300만원이다. 인건비는 1년간 지원을 받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년차에는 1년차 인건비의 60%를 지원받는다.
- 2011년에는 일반인력의 경우 1주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인당 월 98만원을,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당 일반인력 50명 이내와 전문인력 1명을 포함해 최대 51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체당 평균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 2010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8억 5,85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지원이 194억 4천만원으로 총예산의 93.2%를 차지한다.
- 2011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361억 5,64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지원 예산은 348억 2,340만원으로 총예산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2010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99개이며, 총 1,302,890천원을 지원하였다.
- 2011년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은 국비 18억 8,200만원(80.0%), 시비 4억 7,050만원(20.0%)으로, 총 23억 5,250만원이다. 2011년 5월 현재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287개 사업

체가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였고, 이중 89개 기관이 선정되어 총 12억 3,230만원을 지원받았다(<표 3-2> 참조).

- 서울시는 2011년 고용노동부 지침과 별도로 인증 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사업체당 지원받은 평균사업개발비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857만원,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1,644만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240만원이다(<표 3-2> 참조).

<표 3-2> 서울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

구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2010년	지원 사업체 수	17개	12개	70개	99개
	총지원금액	389,682천원	151,830천원	761,378천원	1,302,890천원
	사업체당 지원액	22,922천원	12,653천원	10,877천원	13,161천원
2011년 (5월 기준)	신청 사업체 수	73개	35개	179개	287개
	지원 사업체 수	15개	9개	65개	89개
	총지원금액	278,500천원	148,000천원	805,800천원	1,232,300천원
	사업체당 지원액	18,567천원	16,444천원	12,397천원	13,846천원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경영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문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업체당 96시간 이내에서 방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11년에는 35명의 전문컨설턴트를 선발하였다.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

- 2011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경영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CEO 아카데미 사업은 4주 동안 32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1회 참여인원은 50~60명 정도이다.

3) 자치구

○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2009년 7월 용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적기업 업무가 이관되는 2010년에는 종로구, 송파구, 동작구 등의 13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1년 5월 현재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대문구는 입법예고 상태에 있다. 중구, 성동구, 관악구 등의 3개 자치구는 이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표 3-3> 참조).

〈표 3-3〉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현황 (연도별)

연도	자치구	자치구수
2009년	용산구(7월), 마포구(10월), 중랑구(12월)	3개
2010년	종로구(5월), 송파구(5월), 동작구(6월), 강남구(8월), 강동구(8월), 은평구(9월), 양천구(9월), 강서구(10월), 성북구(12월), 노원구(12월), 구로구(12월), 강북구(12월), 영등포구(12월)	13개
2011년	조례 제정	금천구(1월), 광진구(3월), 서대문구(3월), 도봉구(4월), 서초구(5월)
	입법 예고	동대문구
미제정	중구, 성동구, 관악구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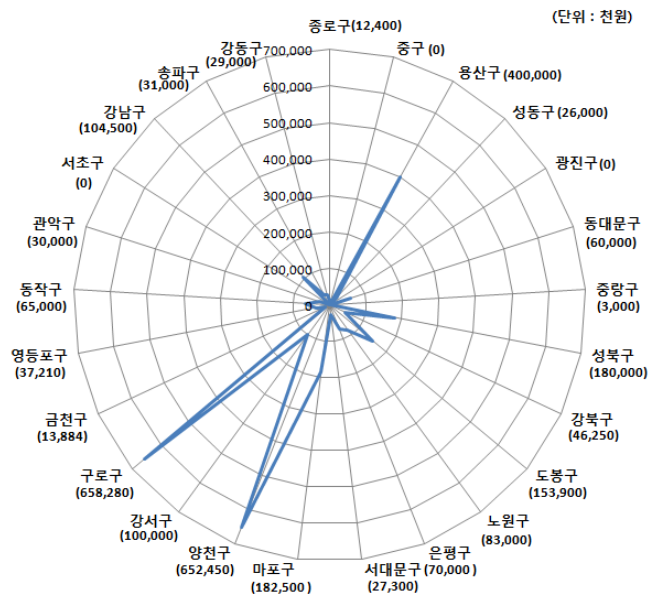
자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5월 25일.

○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2010년에는 2개 자치구(마포구, 관악구)가 사회적기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2011년에는 22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자치구는 구로구(6억 5,828만원)이고, 이어 양천구(6억 5,245만원), 용산구(4억원), 마포구(1억 8,250만원), 성북구(1억 8천만원), 도봉구(1억 5,390만원), 강남구(1억 450만원), 강서구(1억원), 노원구(8,300만원), 은평구(7,000만원), 동작구(6,500만원), 동대문구(6,000만원) 순이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3개 자치구는 중구, 광진구, 서초구이다(<그림 3-8> 참조).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그림 3-8〉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의 예산규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2011년 4월 현재 10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중 지역자활센터장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는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의 4개 자치구이다(<그림 3-9> 참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한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장 포함	지역자활센터장 미포함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총 15개)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강남구 (총 6개)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그림 3-9〉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와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등의 11개 자치구이다(<표 3-4>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경영지원 사업을 하는 자치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4〉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

No.	자치구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작업 및 사무공간 지원	우선구매의 촉진			조세 감면	홍보	교육	기타
					구매	목표제	홍보				
1	종로구	X	X	X	O	X	O	X	O	O	X
2	중구	X	X	X	O	X	X	X	X	X	X
3	용산구	O	X	O	O	X	O	X	O	O	X
4	성동구	O	X	X	X	X	X	X	O	O	X
5	광진구	X	X	X	X	X	O	X	O	X	X
6	동대문구	X	X	X	O	X	X	X	X	X	X
7	중랑구	O	X	X	O	X	O	X	O	O	X
8	성북구	O	X	X	X	X	O	X	O	O	X
9	강북구	X	X	X	O	X	O	X	O	O	X
10	도봉구	X	X	X	O	X	O	X	O	O	O
11	노원구	O	X	O	O	O	O	X	O	O	X

〈표 계속〉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

No.	자치구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작업 및 사무공간 지원	우선구매의 촉진			조세 감면	홍보	교육	기타
					구매	목표제	홍보				
12	은평구	X	X	X	O	O	O	X	O	O	X
13	서대문구	X	X	X	O	X	O	X	O	O	X
14	마포구	O	X	X	O	X	O	X	O	X	X
15	양천구	O	X	X	X	X	X	X	O	O	X
16	강서구	O	X	X	O	O	O	X	O	X	X
17	구로구	O	X	X	O	X	O	X	O	O	X
18	금천구	X	X	O	O	O	O	X	O	O	X
19	영등포구	X	X	X	O	O	O	X	O	O	X
20	동작구	X	X	O	O	X	O	X	O	X	X
21	관악구	O	X	X	O	O	O	X	O	X	X
22	서초구	X	X	X	X	X	O	X	O	X	X
23	강남구	X	X	X	O	X	O	X	O	O	O
24	송파구	O	X	X	O	X	O	X	O	O	X
25	강동구	X	X	X	O	O	O	X	O	O	X
합계		11개	0개	4개	20개	7개	21개	0개	23개	17개	2개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1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주2 : O(해당), X(비해당)

- 작업 및 사무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와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의 4개 자치구이다(<표 3-4>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의 20개 자치구이다.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의 7개 자치구이다. 우선구매에 대한 홍보 지원을 한 자치구는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양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이다(<표 3-4> 참조).
- 2011년 4월 현재 조세감면을 지원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표

3-4> 참조).

- 사회적기업 홍보를 지원한 자치구는 23개 자치구이며, 교육을 지원한 자치구는 17개 자치구이다(<표 3-4> 참조).
- 그 밖의 지원 사항으로 도봉구는 마을기업 세움카페와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던팝스오케스트라를 연계하여 카페오픈식에 현악 4중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강남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연계사업을 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 3개 자치구는 자치구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설립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경우 2009년 관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과 공동투자하여 재활용사업체 ‘더 좋은 세상’ 설립을 지원하였다. 용산구는 부지 대여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역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표 3-5> 참조).
- 마포구는 2010년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4개 기관 중에서 주식회사 ‘핵교’를 마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핵교는 시니어 대상 인문학 아카데미 및 역사문화답사 사업을 하면서 마포구로부터 2010년 7월~12월까지 인건비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마포구는 2011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핵교에 위탁하고 있다.
- 은평구는 2011년 집수리와 주택개보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설립 출자금의 약 30%를 출자함으로써 설립 지원을 하였다.

〈표 3-5〉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설립 지원 사례

No.	자치구	사업체 명	지원연도	지원내용	사업 내용
1	용산구	더 좋은 세상	2009년	시설비 및 공유지 지원	재활용 선별
2	마포구	핵교	2010년	인건비 지원	시니어대상 인문학아카데미 및 역사 문화 답사사업, 어린이 대상 워크시트형 도서아이템 발굴 및 개발
3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2011년	주식 출자	집수리, 주택개보수 사업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2.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해 ①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② 국·공유지 우선 임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년의 지원기간이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여 수급자의 수급 제외 또는 적정한 임금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자활공동체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 자활기금 규모 및 집행액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기금에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말 자활기금으로 118.2억원이 조성되어 있다(<표 3-6> 참조).

<표 3-6> 자치구별 자활기금 규모와 집행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활기금액 (a) (2010년 말 기준)	자활기금집행액 (b) (2010년)	자활기금집행비율 (b/a)
서울시	11,820	6,103	51.6
종로구	192	-	-
중구	385	-	-
용산구	-	-	-
성동구	2,312	60	2.6
광진구	313	-	-
동대문구	524	-	-
중랑구	383	-	-
성북구	864	-	-
강북구	764	20	2.6
도봉구	412	-	-
노원구	1,617	50	3.1
은평구	846	-	-
서대문구	1,043	19	1.8
마포구	1,315	60	4.6
양천구	1,148	42	3.7
강서구	1,799	50	2.8
구로구	1,003	17	1.7
금천구	587	-	-
영등포구	1,090	40	3.7
동작구	-	-	-
관악구	329	-	-
서초구	-	-	-
강남구	121	-	-
송파구	929	-	-
강동구	-	-	-
계	29,796	6,461	21.7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활기금 조성이 안 된 자치구는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의 4개 자치구이다. 자활기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23.1억원)이고, 이어 강서구(18.0억원), 노원구(16.2억원), 마포구(13.2억원), 양천구(11.5억원), 영등포구(10.9억원), 서대문구(10.4억원), 구로구(10.0억원) 순이다. 자활기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남구(1.2억원)이고, 이어 종로구(1.9억원), 광진구(3.1억원), 관악구(3.3억원), 중랑구(3.8억원), 중구(3.9억원) 순이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자활기금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 자활기금 집행규모를 보면 서울시는 2010년 자활기금(118.2억원) 중 51.6%인 61억원을 사용하였다. 자활기금이 조성된 21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자활기금을 집행한 자치구는 9개 자치구이며, 자활기금 집행액은 자활기금 의 5% 이하에 머물고 있다(<표 3-6> 참조).

○ 인건비 지원

-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한해서만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검토 후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비 기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단가 기준으로 2011년의 경우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로 하루에 33,000원이다(표준소득액 78만원). 지원기간 중 수익금 발생이 원활하여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 2010년의 경우 163개 자활공동체에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은 수는 109명이다.

○ 사업자금 융자

-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에게 지원하는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2007~2010년 사이에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 국·공유지 임대

— 18개 자치구가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에게 국·공유지를 임대하였고, 임대 건수는 총 28건이다. 자치구별 건물 및 토지 임대의 지원건수는 종로구가 4건, 중구·노원구·강서구가 각각 3건, 마포구가 2건이다(<표 3-7> 참조).

<표 3-7>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우선임대지원 현황 (2010년)

자치구명	구분	자활공동체(자활근로)명
종로구	건물	종로지역자활센터, 인큐베이터사업단, 빨래방, 희망일터
중구	건물	중구지역자활센터(2건), 인큐베이터사업단
용산구	토지	재활용자전거
광진구	건물	광진지역자활센터
성북구	건물	성북지역자활센터
도봉구	건물	도봉지역자활센터
노원구	건물	노원지역자활센터(2건),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건물	서대문지역자활센터
마포구	건물	마포지역자활센터
	토지	아름다운세탁나라
양천구	건물	양천지역자활센터
강서구	건물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강서지역자활센터, 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영등포구	건물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동작구	건물	동작지역자활센터
관악구	건물	청소년자활지원관
서초구	건물	재활용사업단
강남구	건물	강남지역자활센터
송파구	건물	송파지역자활센터
강동구	건물	강동지역자활센터
합계		총 28건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9)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전세점포 임대

—서울시는 2010년 16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포함)를 대상으로 총 8억 4천만원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체당 평균 5,250만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서는 5개 자치구가 20개 사업체에 대해 총 2억 2백만원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하였다(<표 3-8> 참조).

<표 3-8>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단위 : 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지원건수	9	6	15	16
	지원금액	44,500	31,000	50,800	84,000
성동구	지원건수	-	2	-	1
	지원금액	-	19,500	-	6,000
노원구	지원건수	-	1	1	1
	지원금액	-	2,500	6,000	5,000
양천구	지원건수	-	-	-	1
	지원금액	-	-	-	4,200
강서구	지원건수	-	-	3	2
	지원금액	-	-	6,000	5,000
금천구	지원건수	-	1	1	-
	지원금액	-	2,000	7,000	-
합계	지원건수	9	10	20	21
	지원금액	44,500	55,000	69,800	104,200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위탁사업 및 우선구매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위탁을 준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의 9개

자치구이다. 총 13건의 위탁사업 중에서 집수리 위탁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식품판매·외식사업(2건), 세탁·방역사업(2건) 순이다 (<표 3-9> 참조).

<표 3-9> 자치구의 자활공동체 위탁사업 현황 (2010년)

자치구명	자활공동체(자활근로)명	위탁사업명
종로구	서울주거복지사업단	서울형 집수리
용산구	집사랑인테리어	경로당보수공사
	집수리사업단	희망근로집수리
중랑구	참맛	드림스타트밀반찬
	참맛	결식아동급식사업
	주거복지사업단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북구	양곡택배사업단	정부양곡택배운역
은평구	새물내사업단	꿈나무운동화세탁사업
금천구	집수리사업단	서울형 집수리
	영재인테리어	저소득장애인주거개선
영등포구	집수리사업단	서울형 집수리
동작구	세탁, 방역사업단	세탁, 방역
송파구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장애아동통합교육
합계		총 13건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14개 자치구가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구매 건수는 총 37건이며, 구매금액은 총 49.3억원이다 (<표 3-10> 참조).
- 구매 품목은 식품·도시락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서비스 구매는 집수리 3건, 청소 3건, 교육서비스 1건이다(<표 3-10> 참조).

〈표 3-10〉 자치구의 자활공동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현황 (2010년)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명	구매물품	금액
종로구	푸드빌	쌀20kg×39포	1,560
용산구	집사랑인테리어	경로당공사	1,250
		도배, 장판	2,156
		도배, 장판	986
		브로컬리 등	653
광진구	자전거사업단	브레이크, 체인 등	3,169
	행복기프트	김세트, 현수막 등	16,534
	영농사업단	농산품	3,622
	IT교육센터사업단	컴퓨터 교육	900
	되살림사업단	슬리퍼 등	1,751
	트랩사업단	아이트랩 시공	2,648
노원구	청소사업단	보건소 청소	29,100
	사랑의손맛	아동급식도시락	479,954
	영농사업단	구절초 등	9,338
서대문구	다솜도시락	결식아동급식	22,261
마포구	알찬도시락	아동도시락	301,521
	맛을 만드는 사람들	아동도시락	112,949
양천구	어떠한지	통영명함집	51
		통영명함지갑	168
		한지명함집 등	13,495
강서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결식아동급식	3,477,850
구로구	모닝플리워	화분, 꽃	156
	함지박	떡	3,311
	행복한 밥상	도시락	15,907
	고소한 이야기	미숫가루	1,105
	바닥청소	바닥청소	28,199
	고소한 이야기	참기름세트	6,142
영등포구	청소사업단	청소대행 등	8,809
동작구	맛누리	밑반찬 등	24,099
관악구	니눔공동체	아동급식도시락	196,803
	엄마손맛	아동급식도시락	158,874
	꽃공예사업단	꽃	1,545
	굿베이커리	빵	285
	봉제사업단	패션가방	250
	떡 사업단	떡	817
송파구	초록세상EM	비누 등	226
강동구	맛 좋은 베이커리	쿠키 등	700
합계	33개 자활공동체/자활사업단	-	4,929,143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3. 마을기업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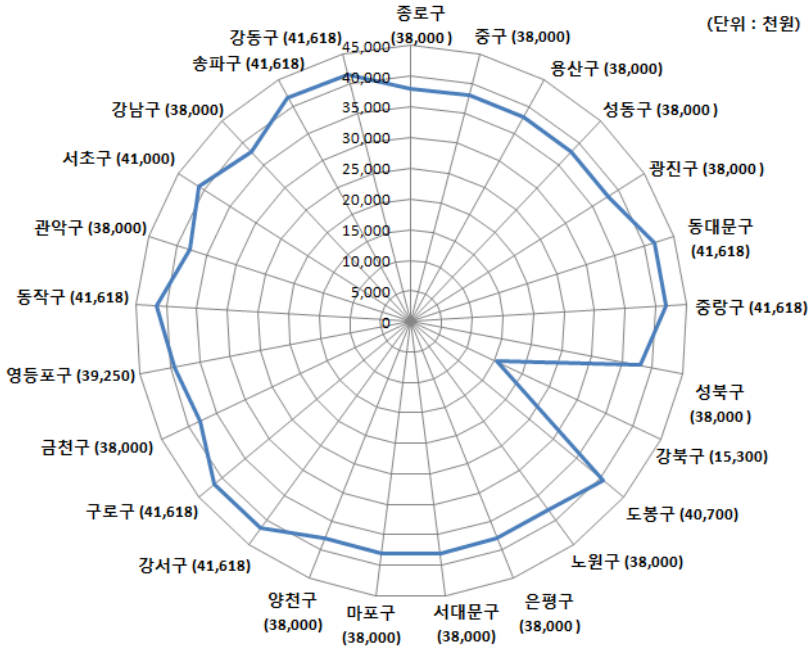
-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연도에는 5,000만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으로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의 10% 내외에서 전문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출은 최소화하되, 마을기업 대표·간사 등 초기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다.
- 마을기업 지원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예산은 총 248억원으로³⁰⁾, 이중 국비 예산이 50%인 124억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각각 25%인 62억원이다.
- 서울시가 2011년에 선정한 46개 마을기업의 지원금은 총 1,965,146천원이며, 사업체당 평균 42,721천원을 지원받게 된다³¹⁾.
- 자치구별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동대문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가 각각 41,618천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는 41,000천원, 도봉구는 40,700천원, 영등포구는 39,250천원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의 14개 자치구는 38,000천원이고, 강북구는 15,300천원으로 가장 낮다(<그림 3-10> 참조).

○경영지원

-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 위탁협약’을 하면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을 포함하고 있다.

30)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선정된 184개 단체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1년에 500개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임(자료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31)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그림 3-10〉 자치구별 마을기업 예산

○ 자치구 지원현황

- 마을기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므로 자치구 지원은 현재 재정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 중랑구, 서초구는 경영지원을 하였고, 노원구와 구로구는 작업 및 사무 공간 지원을 하였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우선구매 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자치구는 홍보지원사업을 하였고, 6개 자치구는 교육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표 3-11〉 자치구별 마을기업 지원사항

No.	자치구	재정지원	경영지원	작업 및 사무공간 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	교육	기타
1	종로구	○	×	×	×	○	×	×
2	중구	○	×	×	×	×	×	×
3	용산구	○	×	×	×	×	×	×
4	성동구	○	×	×	×	×	×	×
5	광진구	○	×	×	×	×	×	×
6	동대문구	○	×	×	×	×	×	×
7	종랑구	○	○	×	×	○	×	×
8	성북구	○	×	×	×	×	×	×
9	강북구	○	×	×	×	×	×	×
10	도봉구	○	×	×	○	○	○	○
11	노원구	○	×	○	○	○	○	×
12	은평구	○	×	×	×	×	×	×
13	서대문구	○	×	×	×	×	×	×
14	마포구	○	×	×	×	×	×	×
15	양천구	○	×	×	×	×	×	×
16	강서구	○	×	×	×	×	×	×
17	구로구	○	×	○	×	○	○	×
18	금천구	○	×	×	×	×	×	×
19	영등포구	○	×	×	×	○	○	×
20	동작구	○	×	×	×	×	×	×
21	관악구	○	×	×	×	×	×	×
22	서초구	○	○	×	×	○	×	×
23	강남구	○	×	×	×	×	×	×
24	송파구	○	×	×	×	×	○	×
25	강동구	○	×	×	×	×	○	×
합계		25개	2개	2개	2개	7개	6개	1개

자료 :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1 : 조사시점은 2011년 4월.

주2 : ○(해당), ×(비해당).

제3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육성거점으로 지역사회와 기초 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나, 자치구나 지역사회 단위로 지원하는 육성정책은 미흡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이 강조되고,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지역사회공헌형이 생겨났다. 고용노동부도 이후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외하고 관리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치구가 사업비 지원 및 관리·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마을기업 발굴, 심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구청장이 자활공동체 인정 주체이자, 지원주체로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없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자치구의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과 연계성, 지원에 관한 조항은 없다. 21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도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국가 계획과 서울시 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치구로 관리업무가 이양되었지만,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자치구 단위사업에 대한 중앙 및 서울시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달리 제도적으로 별도의 육성계획 수립 장치는 없으나, 자치구나 서울시의 연도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에 자활공동체가 계획내용에 포함된다. 구청장은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장은 자치구 자활지원계획을 통합하여 서울시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자활지원계획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상향식 계획수립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서울시 계획 간의 연계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체 통합관리 가능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로 나누어진다. 중앙 3개 부처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 결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자활지원과에서 자활공동체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부서가 두 개 과로 축약된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 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가진 자치구는 7개 자치구이다. 이 중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동구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담당과와 지역경제과를 동일 국에 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자치구 차원에서는 중앙 3개 부처사업을 한 과에서 통합관리하여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경제업무와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자치구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다. 국가 및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자치구의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전반을 반영한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 개별 사업체 인건비 지원사업에 예산 집중

-서울시 2011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96.3%가 사업체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경우 72%가 인건비 지원예산이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단순하게 개별 사업체 대상 인건비 지원에 주로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인건비 지원을 통한 개별 사업체 발굴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사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통한 육성전략이나 예산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육성정책의 차이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유형과 수에 격차가 있고, 지원사업에도 격차가 있다. 2011년 5월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1개 자치구가 입법예고 중이다.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5개 자치구 중 2011년에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을 책정한 자치구는 22개이며, 3개 자치구는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구로구가 6억 5,828만원을 책정하여 예산이 가장 많으며, 종로구가 1,240만원을 책정하여 예산이 가장 적다.

-작업장을 지원한 자치구는 4개 자치구이며, 우선구매목표제를 설정한 자치구는 7개 자치구이다. 용산구, 은평구의 경우 자치구 특성 및 자치구 정책과 연관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설립하기도 하였다.

-자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자치구의 자활기금 규모와 기금집행액에서도 자치구별 차이가 있다. 자활기금이 있는 자치구는 21개 자치구이며, 자

활기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2,31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121백만원이다. 자활기금이 있는 21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자활기금을 집행한 자치구는 9개로 과반수의 자치구가 자활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활기금 집행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 마포구로 각각 6천만원을 집행하였다. 자활기금을 집행한 9개 자치구의 자활기금액 대비 집행율은 마포구가 4.6%로 가장 높고, 구로구가 1.7%로 가장 낮다. 자활기금은 적립된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너무 낮은 집행률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체당 2년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 모두 2011년 마을기업예산을 책정하였다. 자치구별 마을기업 예산액은 최고 4천 1백만원에서 최저 1천 5백만이다. 2011년 5월 현재 마을기업이 없는 2개 자치구(동대문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23개 자치구별로 최고 4개, 최저 1개씩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 사회적 경제 사업체별 지원사업의 상대적 격차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제1·2차)의 경우 2010년 1년간 사업체당 평균 12.9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자활공동체의 경우 2010년 사업체당 평균 1.5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받았다. 마을기업의 경우 지원금에서 인건비 지출은 가능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금에서 1~2인의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비해 사업체당 인건비 지원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체 및 공공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인건

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일을 통해 직업훈련 및 사회통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차원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업체가 사회적 목적 달성과 기업적 마인드보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에 치중할 수 있고, 인건비 지원 중단 이후의 고용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체들이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함으로써 공공의 관리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010년에는 70개 사업체, 2011년에는 5월 현재 65개 사업체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았다. 2010년에는 사업체당 평균 10,877천원, 2011년에는 사업체당 평균 12,397천원을 지원 받았다. 마을기업 46개는 2011년 사업체당 평균 42,721천원을 지원받았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2007~2010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업자금융자를 받은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는 2010년 21개 사업체가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았고 사업체당 평균 지원금은 4,962만원이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는 2011년 3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지원하고 물품 구매 시 종합안내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가이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도 2011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자치구가 20개이며, 7개 자치구는 우선구매 목표제를 설정하였고, 21개 자치구는 우선구매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에 사업우선위탁을 한 자치구는 2010년 9개 자치구이며 총 13건의 사업을 위탁하였

다. 2010년 14개 자치구가 33개 자활공동체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업우선위탁이 10여년간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정책적 관심을 적게 받았고, 지원실적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존 중간지원기관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 사업체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우 정책사업화된 1~3년의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체의 특성과 필요성에 부응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지식수준은 현재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사업체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의 기존자원과 다차원적 협력시스템을 맺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공동체 인큐베이팅 역할은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여타 자활업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광역자활센터가 2010년 말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자활공동체를 포함한 일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과 특성

제1절 사업체 현황

제2절 사업체 유형별 특성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연대 사례

제4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 4 장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과 특성

제1절 사업체 현황

1. 규모

○육성목표

-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까지 1,000개, 2014년까지 1,800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후반기부터 마을기업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까지 1,0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총 186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활공동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자활공동체 수를 200개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³²⁾.

32) 서울시, 2011,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10-2014』.

○ 신청 및 인증지정 사업체 현황

- 서울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4개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사업체수는 2007년 18개, 2008년 49개, 2009년 56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수는 2007년 14개, 2008년 35개, 2008년 20개, 2010년 45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인증률은 2007년 77.8%, 2008년 71.4%로 높았으나 2009년에 35.7%, 2010년(제1·2차)에는 40.0%대로 감소하였다. 2010년 제3·4차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41개 사업체 중에서 51.2%인 21개 사업체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이다. 이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4-1>, <표 4-2> 참조).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제1~4차)에 신청한 사업체수는 939개이며, 이중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309개로 지정률이 32.9%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309개) 중에서 2010년 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체는 6.8%인 21개 사업체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지정을 받은 110개 사업체 중에서 60.0%인 66개 사업체가 2년차에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제1~3차 지정 사업체(252개) 중에서 5.6%인 14개 사업체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스스로 포기하였다(<표 4-2> 참조).
- 마을기업은 2010년 후반기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32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9개 사업체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1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2개 사업체는 2차년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익 창출이 되어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머지 6개 사업체는 연장 신청을 통해 2차년도에 재선정되었다. 2011년 3월 1차 공모에는 92개 사업체(재심사 6개 사업체 포함)가 신청하여, 이중 50.0%인 46개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표 4-1> 참조).

-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활공동체는 2006년 68개에서 2010년 16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4-1> 참조).
- 생활협동조합은 2000~2005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체가 19개였고, 2011년 3월 현재에는 50개로 늘어났다(<표 4-1> 참조).

<표 4-1> 사업체 유형별 신청 및 인증·지정 현황 (연도별)

(단위 : 개, %)

구분		2000-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신청	-	-	18	49	56	10*	-	-
	인증	-	-	14	35	20	4*	41**	114
	인증률	-	-	77.8	71.4	35.7	40.0	-	-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	-	-	-	-	939	-	939
	지정	-	-	-	-	-	309	-	309
	지정률	-	-	-	-	-	32.9	-	32.9
마을 기업	신청	-	-	-	-	-	32	91	123
	지정	-	-	-	-	-	9	46	55
	지정률	-	-	-	-	-	28.1	50.5	44.7
자활 공동체	인정	-	68***	-	130	156	163	-	-
생활협동조합	인가	19	3	1	3	8	12	4	5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심의 자료집」; 서울시, 2011,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10-2014」(***);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주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2010년 제1·2차 자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2010년 제3·4차 자료.

주2 :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제1~4차 자료.

주3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2011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전환됨.

주4 : 2011년 3월 현재 서울시 설립인가 생활협동조합은 총 56개임. 이중 학교나 종교단체 생활협동조합은 제외하였음.

〈표 4-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지정·지정 포기 현황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합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110개 (100.0%)	85개 (100.0%)	57개 (100.0%)	57개	309개 (100.0%)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17개 (15.5%)	3개 (3.5%)	1개 (1.8%)	-	21개 (6.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연장**	66개 (60.0%)	-	-	-	66개 (21.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연장되지 않은 경우***	22개 (20.0%)	-	-	-	22개 (7.1%)
자체 포기	5개 (4.5%)	7개 (8.2%)	2개 (3.5%)	-	14개 (4.5%)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주1 : *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주2 : **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재연장된 경우.

주3 : ***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재연장되지 않은 경우.

2. 자치구별 사업체 현황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가 114개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50개(2011년 3월 기준)가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³³⁾은 제1~4차에 걸쳐 309개가 지정을 받았으며, 이중에서 2011년 4월 현재 지원받는 기관은 총 252개이다³⁴⁾. 마을기업은 46개, 자활공동체는 155개(2010년 12월 기준)이다. 서울시에서 설립인가를 한 생활협동조합 56개(2011년 3월 기준) 중에서 지역사회형 생활협동조합은 50개이다.

-
- 3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제5차 공모는 2011년 4월에 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말에 지정될 예정이다.
- 34) 제1~4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309개임. 이중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기관 21개, 재연장을 받지 못한 기관 22개(제1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자체 포기한 기관 14개로, 이를 제외하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은 총 252개임(2011년 4월 현재).

-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마포구(21개)이고, 이어 종로구(20개), 영등포구(17개), 강남구(12개), 중구(10개), 서초구(10개) 순이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성동구(1개)이고, 이어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가 각각 2개로 적다(<표 4-3> 참조).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가 가장 많이 소재한 자치구는 마포구(29개)이고, 이어 종로구(25개), 강남구(22개), 영등포구(21개), 중구(13개), 서초구(12개), 송파구(12개), 강서구(11개), 은평구(10개), 동작구(1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에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 마을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는 자치구는 강서구와 구로구로 각각 4개이고, 이어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송파구가 각각 3개이다. 마을기업이 없는 자치구는 동대문구와 강남구이며, 그 외 17개 자치구는 1~2개의 마을기업이 있다(<표 4-3> 참조).
- 자활공동체가 가장 많이 소재하는 자치구는 노원구(19개)이고, 이어 강서구(14개), 구로구(12개), 관악구(12개) 순이다. 자활공동체가 많은 자치구는 지역자활센터 수와 관련이 있다. 강서구와 관악구, 노원구에는 각각 3개, 구로구에는 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서초구는 자활공동체도 없다(<표 4-3> 참조).
- 생활협동조합은 마포구(5개)에 가장 많이 소재하며, 이어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4개가 있다. 동대문구, 은평구, 서초구에는 각각 3개, 종로구, 성북구, 영등포구에는 각각 2개가 있다. 생활협동조합이 소재하지 않는 자치구는 성동구, 금천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이며, 그 외 10개 자치구에 각각 1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다(<표 4-3> 참조).

〈표 4-3〉 사업체 유형별 자치구 분포 현황

(단위 : 개(%))

자치구	사업체 유형						전체
	고용노동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공동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종로구	15 (13.2)	5 (10.0)	25 (9.9)	1 (2.2)	4 (2.6)	2 (4.0)	52 (7.8)
중구	9 (7.9)	1 (2.0)	13 (5.2)	2 (4.3)	2 (1.3)	1 (2.0)	28 (4.2)
용산구	4 (3.5)	1 (2.0)	8 (3.2)	3 (6.5)	3 (1.9)	1 (2.0)	20 (3.0)
성동구	1 (0.9)	0 (0.0)	5 (2.0)	2 (4.3)	5 (3.2)	0 (0.0)	13 (1.9)
광진구	6 (5.3)	1 (2.0)	3 (1.2)	3 (6.5)	6 (3.9)	1 (2.0)	20 (3.0)
동대문구	1 (0.9)	2 (4.0)	0 (0.0)	0 (0.0)	3 (1.9)	3 (6.0)	9 (1.3)
중랑구	2 (1.8)	0 (0.0)	4 (1.6)	2 (4.3)	7 (4.5)	1 (2.0)	16 (2.4)
성북구	2 (1.8)	4 (8.0)	6 (2.4)	1 (2.2)	5 (3.2)	2 (4.0)	20 (3.0)
강북구	4 (3.5)	0 (0.0)	4 (1.6)	2 (4.3)	6 (3.9)	1 (2.0)	17 (2.5)
도봉구	2 (1.8)	0 (0.0)	5 (2.0)	3 (6.5)	4 (2.6)	1 (2.0)	15 (2.2)
노원구	3 (2.6)	2 (4.0)	9 (3.6)	2 (4.3)	19 (12.3)	1 (2.0)	36 (5.4)
은평구	1 (0.9)	2 (4.0)	10 (4.0)	1 (2.2)	6 (3.9)	3 (6.0)	23 (3.4)
서대문구	3 (2.6)	1 (2.0)	8 (3.2)	1 (2.2)	6 (3.9)	1 (2.0)	20 (3.0)
마포구	14 (12.3)	7 (14.0)	29 (11.5)	2 (4.3)	7 (4.5)	5 (10.0)	64 (9.6)
양천구	1 (0.9)	1 (2.0)	6 (2.4)	2 (4.3)	5 (3.2)	4 (8.0)	19 (2.8)
강서구	3 (2.6)	4 (8.0)	11 (4.4)	4 (8.7)	14 (9.0)	4 (8.0)	40 (6.0)
구로구	5 (4.4)	0 (0.0)	9 (3.6)	4 (8.7)	12 (7.7)	1 (2.0)	31 (4.6)
금천구	2 (1.8)	0 (0.0)	5 (2.0)	2 (4.3)	3 (1.9)	0 (0.0)	12 (1.8)
영등포구	14 (12.3)	3 (6.0)	21 (8.3)	1 (2.2)	6 (3.9)	2 (4.0)	47 (7.0)
동작구	1 (0.9)	1 (2.0)	10 (4.0)	1 (2.2)	7 (4.5)	1 (2.0)	21 (3.1)
관악구	5 (.4)	3 (6.0)	8 (3.2)	1 (2.2)	12 (7.7)	4 (8.0)	33 (4.9)
서초구	6 (5.3)	4 (8.0)	12 (4.8)	1 (2.2)	0 (0.0)	3 (6.0)	26 (3.9)
강남구	6 (5.3)	6 (12.0)	22 (8.7)	0 (0.0)	3 (1.9)	4 (8.0)	41 (6.1)
송파구	1 (0.9)	1 (2.0)	12 (4.8)	3 (6.5)	4 (2.6)	4 (8.0)	25 (3.7)
강동구	3 (2.6)	1 (2.0)	6 (2.4)	2 (4.3)	6 (3.9)	0 (0.0)	18 (2.7)
경기도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1 (0.1)
합계	114 (100.0)	50 (100.0)	252 (100.0)	46 (100.0)	155 (100.0)	50 (100.0)	667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심의 자료집」;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분석.

주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07~2010년 누적자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자리창출 사업의 경우는 2011년 3월 22일 자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10년 제1~4차 누적자료, 마을기업의 경우는 2011년 자료,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2010년 12월 자료, 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2011년 3월 자료.

개), 영등포구(47개), 강서구(40개), 노원구(36개), 관악구(33개), 구로구(31개) 순이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동대문구(9개)이고, 이어 금천구(12개), 성동구(13개), 도봉구(15개), 중랑구(16개), 강북구(17개), 강동구(18개), 양천구(19개) 순이다. 그 외 10개 자치구에는 20~29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다(<표 4-3> 참조).

제2절 사업체 유형별 특성

1.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법인형태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경우 상법상 회사가 48.3%로 가장 많으며, 이어 민법상 법인이 28.8%,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각각 12.3%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민법상 법인이 38.4%로 가장 많으며, 이어 상법상 회사가 32.2%, 비영리단체 15.3%, 사회복지법인 13.6% 순이다(<표 4-4> 참조).

<표 4-4>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구분	(단위 : 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합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21 (28.8)	32 (43.8)	9 (12.3)	9 (12.3)	2 (2.7)	73 (100.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93 (38.4)	78 (32.2)	33 (13.6)	37 (15.3)	1 (0.4)	242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주1 : 2010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기관 수는 제1·2차 자료임.

주2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010년 제1~3차 자료임.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이전의 사업 형태에서 자활공동체·지역자활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9.6%이다(<표 4-5> 참조).

<표 4-5>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2007~2010년 제1·2차)

(단위 : 개(%))

구분	사회적 일자리사업	자활공동체·지역 자활센터	장애인작업시설· 단체	기타	합계
전국	162 (50.8)	58 (18.2)	40 (12.5)	59 (18.5)	319 (100.0)
서울	33 (45.2)	7 (9.6)	8 (11.0)	25 (34.2)	73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와 모법인 조직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표 4-6>과 같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모법인의 조직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이 각각 29.9%로 가장 많고,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가 17.7%, 사회복지법인이 12.2% 순이다. 모법인으로 생활협동조합이 1개(0.6%)가 있다. 민법상 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거나 창출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6> 참조).

<표 4-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법인 조직형태 (2010년 제1~3차)

(단위 : 개(%))

구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44 (26.7)	49 (29.9)
민법상 재단법인	4 (2.4)	5 (3.0)
상법상 주식회사	58 (35.2)	49 (29.9)
상법상 유한회사	3 (1.8)	2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1 (0.6)	0 (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24 (14.5)	29 (17.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15 (9.1)	20 (1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활협동조합	0 (0.0)	1 (0.6)
기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16 (9.7)	9 (5.5)
합계	165 (100.0)	164 (100.0)

자료 : 2010년 1~3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재분석.

○ 자활공동체

- 자활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조합 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사업은 사업 신청과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단체의 조직형태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업 대상으로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동 주민자치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에 중점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단체의 조직형태를 보면 비영리단체가 28.3%(1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26.1%(12개), 비영리법인과 마을공동체·모임은 각각 17.4%(8개), 생활협동조합 4.4%(2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시설³⁵⁾, 조합은 각각 2.2%(1개) 순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단체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표 4-7> 참조).

<표 4-7> 마을기업의 조직형태

구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주민자치 위원회	마을 공동체	조합	지역 자활센터	사회 복지시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합계
개	8	13	12	8	1	1	1	2	46
(%)	(17.4)	(28.3)	(26.1)	(17.4)	(2.2)	(2.2)	(2.2)	(4.4)	(100.0)

자료 : 서울시,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심의 자료집」,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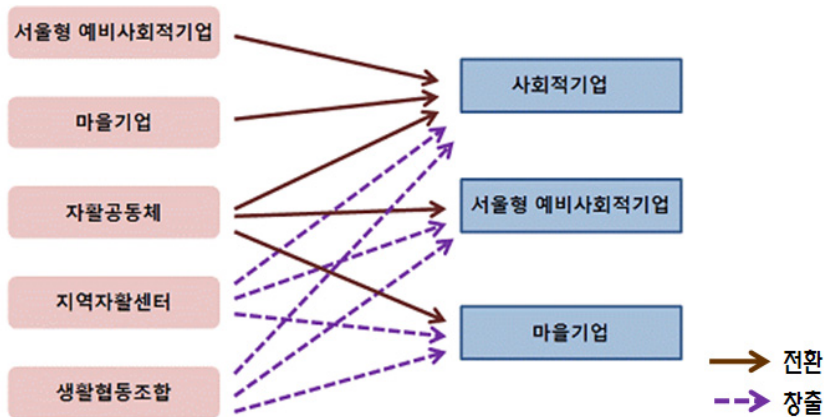
2. 사업체 유형별 전환 과정

- <그림 4-3>은 사업체 유형별 전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모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35)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주체의 법인 조직형태 대신 시설유형으로 구분함.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1개 사업체가 201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9개 사업체 중에서 1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다양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 이외에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지역자활센터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7개(2010년 제1·2차까지)이며, 자활공동체 10개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³⁶⁾.



(그림 4-3) 사업체 유형별 전환 과정

—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의 경우 단체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한 유형인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⁷⁾.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은 2009년에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을 본격

36) 서울시, 2011,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10-2014』.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 내에 사업을 위한 조직과 상근 활동가를 두는 체제를 갖추었다.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에서는 4개의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중 2개 사업단이 2011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³⁸⁾.

3. 업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22개(19.3%)로 가장 많으며, 이어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 16개(14.0%), 간병·생활보조분야 13개(11.4%), 교육 분야 12개(10.5%), 재활용 환경 분야 8개(7.0%), 일반물품 제조 및 판매 7개(6.1%), 인쇄 분야 6개(5.3%), 택배·배달·세탁서비스 분야 5개(4.4%), IT·영상 분야 5개(4.4%) 순이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체가 29개(58.0%)로 가장 많으며, 교육 분야가 8개(16.0%)이다(<표 4-8> 참조).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도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가 60개(23.8%)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교육 분야 47개(18.7%),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 35개(13.9%), 재활용 환경 분야 16개(6.3%), 일반물품 제조 및 판매 16개(6.3%) 순이다(<표 4-8> 참조).

-
- 37)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체 육성을 하고자 함.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워커즈 콜렉티브가 있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체되었음(자료 : 한살림 워커즈 사무국 활동가 심층면담조사).
 - 38) 4개의 워커즈 콜렉티브 업종은 2개 사업체가 친환경 반찬 및 식당사업, 2개 사업체는 면생리대 및 재활용 바느질 제품을 생산함. 4개 사업체 중에서 반찬사업과 바느질 사업체 각각 1개가 해체되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2011년 마을기업 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됨. 이중 바느질 사업체는 2010년 지식경제부 CB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CB사업이 중단되면서 마을기업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음. 바느질 사업체는 1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반찬사업단은 상법상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워커즈 콜렉티브 참여자는 40~50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자료 : 생활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대표자 면담조사).

-마을기업은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가 18개(39.1%)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재활용 환경 분야 7개(15.2%), 일반물품 제조 및 판매 7개(15.2%), 교육 분야 4개(8.7%), 친환경 제품 생산 4개(8.7%), 택배·배달·세탁 서비스 3개(6.5%) 순이다(<표 4-8> 참조).

<표 4-8> 사업체 유형별 업종 현황

(단위 : 개(%))

업종	사업체 유형						전체
	고용노동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공동체	소비자 생활협 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간병·생활보조서비스	13 (11.4)	1 (2.0)	8 (3.2)	1 (2.2)	29 (18.7)	0 (0.0)	52 (7.8)
보육서비스	1 (0.9)	0 (0.0)	6 (2.4)	0 (0.0)	0 (0.0)	0 (0.0)	7 (1.0)
교육서비스	12 (10.5)	8 (16.0)	47 (18.7)	4 (8.7)	20 (12.9)	0 (0.0)	91 (13.6)
보건의료서비스	3 (2.6)	0 (0.0)	5 (2.0)	0 (0.0)	0 (0.0)	22 (44.0)	30 (4.5)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22 (19.3)	29 (58.0)	60 (23.8)	0 (0.0)	0 (0.0)	0 (0.0)	111 (16.6)
재활용 환경 분야	8 (7.0)	2 (4.0)	16 (6.3)	7 (15.2)	2 (1.3)	0 (0.0)	35 (5.2)
청소·차량관리서비스	3 (2.6)	1 (2.0)	5 (2.0)	0 (0.0)	40 (25.8)	0 (0.0)	49 (7.3)
집수리 및 시설관리	1 (0.9)	0 (0.0)	7 (2.8)	1 (2.2)	20 (12.9)	0 (0.0)	29 (4.3)
택배·배달·세탁서비스	5 (4.4)	0 (0.0)	9 (3.6)	3 (6.5)	5 (3.2)	0 (0.0)	22 (3.3)
외식사업, 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	16 (14.0)	3 (6.0)	35 (13.9)	18 (39.1)	24 (15.5)	0 (0.0)	96 (14.4)
친환경 제품 생산	2 (1.8)	1 (2.0)	4 (1.6)	4 (8.7)	0 (0.0)	0 (0.0)	11 (1.6)
일반물품 제조 및 판매	7 (6.1)	3 (6.0)	16 (6.3)	7 (15.2)	7 (4.5)	0 (0.0)	40 (6.0)
유통 판매	0 (0.0)	0 (0.0)	0 (0.0)	0 (0.0)	0 (0.0)	28 (56.0)	28 (4.2)
인쇄, 제본, 복사 분야	6 (5.3)	0 (0.0)	7 (2.8)	0 (0.0)	0 (0.0)	0 (0.0)	13 (1.9)
IT, 영상 분야	5 (4.4)	0 (0.0)	7 (2.8)	0 (0.0)	5 (3.2)	0 (0.0)	17 (2.5)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1 (0.9)	0 (0.0)	10 (4.0)	0 (0.0)	0 (0.0)	0 (0.0)	11 (1.6)
이미용	0 (0.0)	1 (2.0)	1 (0.4)	0 (0.0)	3 (1.9)	0 (0.0)	5 (0.7)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2 (1.8)	0 (0.0)	3 (1.2)	0 (0.0)	0 (0.0)	0 (0.0)	5 (0.7)
기타	7 (6.1)	1 (2.0)	6 (2.4)	1 (2.2)	0 (0.0)	0 (0.0)	15 (2.2)
전체	114 (100.0)	50 (100.0)	252 (100.0)	46 (100.0)	155 (100.0)	50 (100.0)	667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심의 자료 집」;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분석.

주1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07~2010년 누적자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10년 제1~4차 누적 자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10년 제1~4차 누적 자료, 마을기업의 경우는 2011년 자료,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2010년 12월 자료, 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2011년 3월 자료.

주2 : 업종 유형 중에서 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은 문자음성변환서비스, 콜센터 운영 등을 말함.

- 자활공동체의 업종 분포는 청소·차량관리서비스 분야 40개(25.8%), 간병·생활보조서비스 29개(18.7%),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24개(15.5%), 교육 분야 20개(12.9%), 집수리 및 시설관리 20개(12.9%)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 생활협동조합은 유통 판매가 28개(56.0%)이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22개(44.0%)이다(<표 4-8>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총 111개(16.6%)로 가장 많은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없다(<표 4-8>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에 공통적으로 많은 업종은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96개)와 교육 분야(91개)이다(<표 4-8> 참조).
- 자활공동체는 여타 사업체에 비해 간병·생활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많고, 생활협동조합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많다(<표 4-8> 참조).

4. 근로자

○ 규모³⁹⁾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는 20인 미만 사업체가 56.2%, 20~50인 미만이 28.8%, 50~100인 미만이 11.0%, 100인 이상이 4.1%이다(<표 4-9> 참조).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는 1~5명이 43.7%로 가장 많으며, 6~10명도 21.6%로 나타나 10명 이하 고용 사업체가 65.3%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중에서 20명 이하 고용 사업체가 80.0%로 나타나 사회

39) 생활협동조합 중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11년 2월 기준 427명임(자료 :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내부자료).

적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다(<표 4-10> 참조).

-마을기업의 경우 1~5명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1.7%, 6~10명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39.1%로, 10명 이하 고용 사업체가 60.8%이다. 또한 20명 이하 고용 사업체가 84.7%이다(<표 4-10> 참조).

-자활공동체의 경우 근로자가 1~5명인 사업체가 74.8%, 6~10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12.3%로,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체가 87.1%이다. 사업체당 고용인원은 자활공동체가 6.9명으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18.9명)과 마을기업(13.8명)에 비해 적다(<표 4-10> 참조).

<표 4-9>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2007~2010년 제2차)

(단위 : 개(%))

구분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	합계
서울	41 (56.2)	21 (28.8)	8 (11.0)	3 (4.1)	73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4-10> 사업체별 고용 규모

(단위 : 개(%), 명)

구분	1-5명	6~10명	11명~20명	20명 초과	합계	평균인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01 (43.7)	50 (21.6)	34 (14.7)	46 (19.9)	231 (100.0)	18.9
마을기업	10 (21.7)	18 (39.1)	11 (23.9)	7 (15.2)	46 (100.0)	13.8
자활공동체	116 (74.8)	19 (12.3)	9 (5.8)	3 (1.9)	155 (100.0)	6.9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분석.

○근로자 특성

-사회적기업의 경우 35.6%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이며, 21.9%는 혼합형(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다⁴⁰⁾. 서울형

4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이 41.5%, 혼합형이 44.4%이다⁴¹⁾. 이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근로자가 더 많음을 보여 준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근로자 유형은 중고령자가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이 21.2%, 경력단절 여성이 12.9%, 저소득층이 11.1%로 나타났다⁴²⁾.

-자활공동체의 경우 저소득층 자활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다. 즉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 유형 중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에 속한다.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40.8%이며, 차상위 계층 등이 59.2%이다⁴³⁾. 2007년 자활공동체 조사⁴⁴⁾에 의하면 자활공동체 근로자의 74.4%가 여성, 82.9%가 40·50대 여성, 6.3%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89.2%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52.5%가 간병사업, 26.8%가 도시락·음식물 판매에서 일하고 있었다. 2010년 자활공동체 업종 중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간병·산모도우미, 장애아동 교육도우미, 도시락·식당업 비중이 사업체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활공동체 근로자 특성으로 저소득층 4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주: 2007년~2010년 제2차 사회적기업의 서울 지역 총 73개 기관임.

41)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주: 제1~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252개 기관임.

42) 자료: 신경희, 2010,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p.1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3)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162개에 공동체 참여자는 1,058명임. 이중 수급자가 40.8%인 432명이며, 차상위계층 등이 59.2%인 626명으로 나타남(자료: 서울광역자활센터 내부자료).

44) 박은철, 2007,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연대 사례

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공동체⁴⁵⁾

○ 현황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을 중심으로 걸어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을공동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마을 주민을 약 1,000~3,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성미산 마을공동체에는 8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포함)에 7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마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단체 상근활동자(마을일꾼으로 불림) 10여명, 자원활동가 100여명이 있다. 마을기업을 통해 8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월에는 청소년 6명이 성산동(639-10번지)에 도시락 가게(소풍가는 고양이)를 열었고, 반찬가게 마을기업(동네부엌)이 도시락 가게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11〉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

부문	마을공동체
교육	· 공동육아어린이집 4곳, 공동육아 방과후어린이집 2곳 · 대안학교(성미산 학교) 마을학원(굽터, 택견), 성미산 마을배움터
경제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동네부엌(친환경 반찬점), 작은나무(마을 카페), 한뫼두레(바느질 작업장), 비누두레, 성미산 밥상(유기농마을식당), 되살릴가게(재사용 순환), 성미산 대동계
문화	· 성미산 마을극장(사회적기업) · 마포 FM , 마을신문
복지	· 마포희망나눔, 돌봄두레, 의료생협 (독거노인 반찬나눔 및 집수리, 결연사업, 저소득층 건강나눔 등)

자료 : 마포두레생활 협회 홈페이지(<http://www.mapocoop.org/town.php>).

○ 형성 과정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1994년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공동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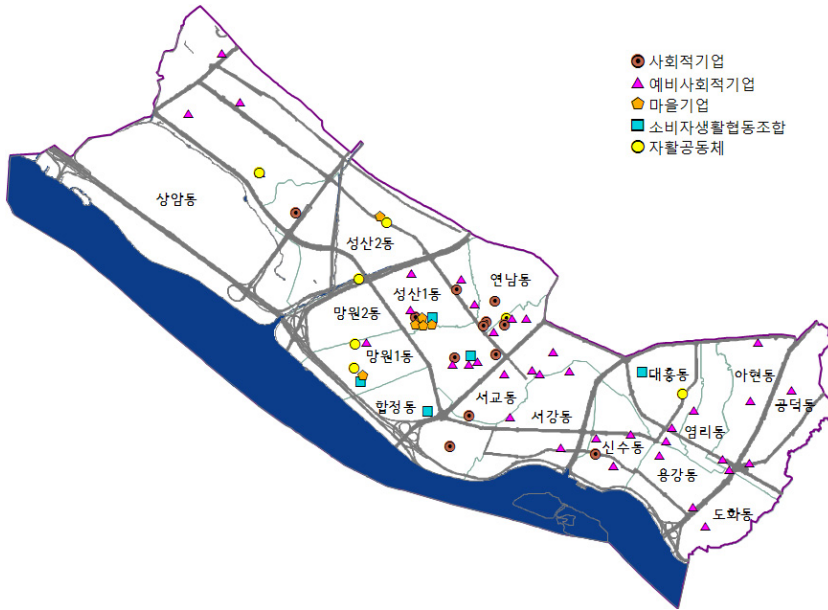
45) 마포희망나눔연대 조경민 대표가 강연용으로 작성한 ‘성미산 마을’자료에 근거하였음.

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어린이집과 방과후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겨났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 교육, 환경 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공동체 조직인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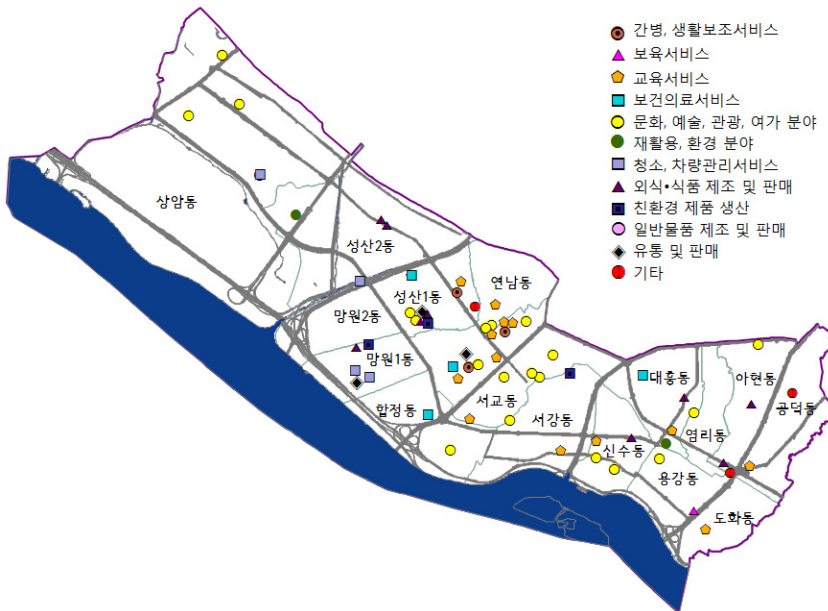
- 2001년 성미산 개발 반대운동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 간에 결속감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사업을 전개해왔다.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2007년)로 선정되어, 마을의 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원받은 이후로 호혜적 지역경제가 작동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하였다.

○ 사회적 경제 구조와 마을기업 창출 과정

- 성미산 마을의 사회적 경제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한 축은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마을출자기업, 사회적기업, 워커즈 콜렉티브), 또 한 축은 지역통화(지역화폐, 쿠폰, 공동구매, 물물교환, 마을장터, 기부), 나머지 한 축은 자발적 노동(자원활동가, 품나눔)이다.
- 이러한 마을의 경제 구조하에서 성미산 마을의 마을기업이 창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인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안하는 단계(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이다. 둘째, 이 제안에 대해 마을 코디네이터, 마을 내 유경험자, 관련 전문가, 지역단체에서 멘토링과 조정을 하는 단계(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를 거친다. 셋째, 이 제안의 사업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운영원칙 등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다(이렇게 합시다). 넷째, 당사자 출자, 마을 출자(대동계, 두레생협, 동네금고 등), 출자자 모집을 거친다(마음을 모아 봅시다). 다섯째, 지역 네트워크를 하는 단계(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이다.



〈그림 4-4〉 마포구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현황



〈그림 4-5〉 마포구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업종별 현황

2. 강원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현황⁴⁶⁾

—원주시에는 2011년 3월 현재 7개 분야의 29개 사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그림 4-6> 참조). 이중 10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2011년 5월말 현재 원주시 인구는 31만 9,143명이다⁴⁷⁾.

농업 가공·유통	소비	사회서비스	교육	신용	문화	환경·생태
가톨릭농민회	원주한살림	원주 나눔의지	소꿉마당	밝음신협	문화생협	(주)노나메기
삼도생협	원주생협	자활센터	참꽃학교	누리협동조합	신화마을	(유)다지원
원주생협	노인생협	길거리사랑촌	꺼봉이 길 찾기	길거리 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생산자)	의료생협	위스타트				
(주)살림농산	상지대생협	원주YMCA 아가야				
행복한 시루봉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합)햇살니눔						
신화마을						

· 농업 및 가공 유통 : 9개 조직
· 소비자 분야 : 5개 조직(노인생협·일자리)
· 사회서비스 : 5개 조직
· 신용 : 2개 조직
· 문화 : 2개 조직
· 환경생태 : 2개 조직
(※ ■ 사회적기업 10개)

자료: 김선기, 2011,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사업 심포지엄」.

<그림 4-6>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46) 자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원주(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사업 심포지엄 자료집」.

47) 자료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형성 과정

- 원주는 1970년대부터 가톨릭 사회운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1972년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이 창설되었고, 1985년 원주신협이 지원으로 현 원주한살림생협이 창립되었다. 1989년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현 원주생협이 창립되었고, 1999년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2001년 원주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고, 원주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발의로 2002년 원주의료생협이 출발하였다.
- 2003년 8개의 개별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창립하였다. 이후 네트워크를 통한 연관사업, 신규사업이 분화되어 2011년에는 29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이중 10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3.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협력사례

○현황

-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 방학점(도봉구)과 마을기업 목화송이와 세움 카페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층에 목화송이, 1층에 아름다운 가게, 2층에 세움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마을기업에게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재임대를 한 것이다.

○마을기업 목화송이

- 목화송이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의 워커즈 콜렉티브로 출발하였다. 대안생리대 생산과 보급, 바느질에 관심 있는 3명의 여성이 10만원씩 출자하여 2005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의 주민공동작업장(풀빛 살림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없었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목화송이가 생산한 장바구니를 한 살림 생협매장을 통해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목화송이가 점차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서 주민공동작업장을 떠나야 하였고, 2009년 워커즈 4명이 1,600만원을 출자하여 임대보증금을 마련함으로써 새 작업장을 얻어 이전하였다. 목화송이가 대안생리대 생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 되었으나, 허가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작업장 확보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점에 아름다운 가게 방학점의 지하가 비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였고, 아름다운 가게의 지원으로 목화송이는 이전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사업 확장에 필요한 더 넓은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목화송이는 2010년 9월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지원금 4천만원 이외에 제품 컨설팅, 교육지원을 받았다. 2011년 CB사업이 중단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에 지원하여 2011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3월 현재 유급근로자 4명과 정부 지원 자활근로자 2명이 일하고 있다.

— 목화송이가 생산한 제품들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통해 유통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 리폼 사업을 위탁받을 예정이다. 목화송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사업초기의 공동작업장 지원, 생활협동조합이란 안정적 거래처 확보, 정부의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재활용 가게인 아름다운 가게도 재활용 의류 리폼사업을 목화송이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을기업 세움카페

- 아름다운 가게 2층에는 2011년 도봉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커피 전문점 세움카페가 입지해 있다. 세움카페는 발달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청소년 부모들과 방앗골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에 걸쳐 뜻을 모아 설립한 카페로 2011년 3월에 개업을 하였다. 세움카페에는 방앗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년간 요리 및 바리스타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청소년 5명과 매니저 1명이 일하고 있다.
- 아름다운 가게가 낮은 임대료로 전대차 계약을 해주어 카페 개업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청소년어머니들이 자원봉사로 제과제빵을 만들어 카페에 물품 제공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세움카페는 카페 외에 지역의 장애청소년을 위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훈련 거점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도봉구에 2호점, 3호점을 개설한다는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
- 세움카페는 현재 방앗골종합사회복지관의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두레비전학교 학부모회 대표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지는 학부모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 한다.



〈그림 4-7〉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마을기업의 제휴

-아름다운 가게의 인지도가 높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세움카페를 이용할 가능성도 많다. 세움카페가 아름다운 가게와 동일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얻는 경영상의 이점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지도가 높은 아름다운 가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름다운 가게 고객들이 카페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목화송이의 경우 세움카페 개업 시에 고객 대상 교육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목화송이도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양적 성장 추세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시작된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정책으로 지난 1년간 309개 사업체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2010년 제3·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41개 사업체 중에서 21개 사업체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서울에는 3여년만에 사회적기업 114개, 고용노동부 및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02개 등 총 41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생겨났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별도로 2010년 하반기에 시작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 서울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가 46개가 있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에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차원에

서 2000년 가장 먼저 제도화된 자활공동체의 경우 10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서울에는 163개 사업체가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여타 사회적 경제 사업체와 달리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2008년부터 그 수가 증가하여 약 3년간 27개가 생활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2011년 3월 현재 50개의 지역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급속도로 늘어나 2011년 3월 현재 약 667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2012년까지 각각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3개월마다 인증 및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기업을 2013년까지 총 186개로,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200개로 확장하려는 목표 설정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는 향후에도 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분포 및 특성의 차이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수와 유형에 차이가 있다. 사업체 총량으로 사업체수가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64개), 종로구(52), 영등포구(47개), 강남구(41개), 강서구(40개) 순이다. 반면 사업체 수가 적은 자치구는 동대문구(9개), 금천구(12개), 성동구(13개), 도봉구(15개), 중랑구(16개), 강북구(17개), 강동구(18개) 순이다.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분포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분포에도 차이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마포구(50개), 종로구(45개), 영등포구(38개), 강남구(34개), 중구(23개), 서초구(22개) 순으로 많다. 자활공동체는 노원구(19개), 강서구(14개), 구로구(12개), 관악구(12개) 순으로 많다. 마을기업은 한 곳도

없는 동대문구와 강남구 2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23개 자치구에 1~4개가 분포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마포구가 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에 4개씩 분포하고 있다.

-장소 중심성이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많고, 자활공동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지역자활센터가 2~3개 소재하고 있는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의 경우 자활공동체가 많다.

○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유형별 업종 차이

-전체 사회적 경제 사업체(667개)에서 첫 번째로 많은 업종은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로 111개(16.6%) 사업체이며, 111개 사업체 모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은 외식사업·식품 제조 및 판매로 96개(14.4%) 사업체이다.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 사업체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은 업종은 교육서비스로 91개(13.6%)사업체이며, 이중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47개(51.6%), 자활공동체가 20개(22.0%)를 차지하고 있다. 자활공동체 교육서비스는 장애통합교육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사업체 유형별 업종 분포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가 19.3%로 가장 많고, 이어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분야 14.0%, 간병·생활보조서비스 11.4%, 교육서비스 10.5% 순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관광·여가 분야 사업체 비중이 23.8%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 18.7%,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13.9% 순이다.

-마을기업은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체가 39.1%로 가장 많고, 재활용환경 분야와 일반물품 제조 및 판매도 각각 15.2%로 많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청소·차량관리서비스가 25.8%로 가장 많고, 이어

간병·생활보조서비스 18.7%, 외식·식품 제조 및 판매 15.5%, 교육 분야 12.9%, 집수리·시설관리 12.9%의 순이다.

-생활협동조합은 유통판매가 56.0%, 보건의료서비스가 44.0%이다.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근로자 규모와 특성 차이

-사회적기업의 경우 56.2%가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체이지만, 여타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고용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의 경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8.9명, 마을기업은 13.8명, 자활공동체는 6.9명이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5명 이하 사업체가 74.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4대 보험 가입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 유형으로는 중고령자가 35.2%, 장애인이 21.2%, 경력 단절 여성이 12.9%, 저소득층이 11.1%를 차지한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40.8%, 차상위계층 등이 59.2%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약 3/4이 저소득층 4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으로 추정된다. 생활협동조합 중에서 유통판매 분야의 경우 여성 근로자 참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통 분야 생활협동조합 여성 근로자 조사에 의하면 40대 이상 기혼여성으로 고학력의 중산층 소속감을 가진 여성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유형 전환과 재창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이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즉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48) 자료 : 신경희, 2007,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사례가 나타나 마을기업 지원사업도 사회적기업 육성 전 단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과 달리 사업체 조직형태에 대한 요건이 없고, 사회적 목적의 선택범위도 넓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용이한 점이 있다.
- 자활공동체의 경우 지역자활센터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10여년에 걸쳐 사업체가 형성되어왔기 때문인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다양하게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공동체와 별도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 생활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해온 위커즈 콜렉티브 사업은 마을기업 사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협의 위커즈 콜렉티브가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이외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 사업체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사업체란 범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개념적으로 상호공통점이 많기는 하나, 사업체의 출발점과 정부의 지원요건, 지원사항의 차이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성장과 지속가능성 요인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확대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적 성장을 하고 사업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시의 사회적 경제 사업의 출발점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당사자주의 원칙이 더 강하다. 사회적 경제 사업이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미산과 원주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출발하였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CB), 자활공동체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시에서는 실험적으로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당사자주의에 기반해 출발한 만큼,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시의 경우 사업체 운영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생활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속성인 이해당사자 참여, 시민성, 자율성, 지역성이 역으로 사업성을 담보해주면서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와 마을기업 목화송이, 세움카페는 정부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의 경우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정부나 ‘함께 일하는 재단’의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하였

고, 이러한 외부지원들이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향후 지역네트워크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네트워크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지역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지역내부자원을 상호 활용하여 지역순환경제가 일정 수준 작동하는 한편, 사업체별 위험관리도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가령 유통망을 가진 생활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이나 자활공동체의 생산 물품을 유통시킨다면, 생협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하고 생산자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하여 두 사업체 모두 경영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작동할 경우, 신규 및 연관사업 창출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사업체가 새로 진입하는 사업체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사업체 확장과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장 정책 제안



제 5 장

정책 제안

1. 정책 방향

-정부 육성정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한편, 생활협동조합도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 차이가 있으나 현재 공공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지원사업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여건상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양산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중단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667개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각각 1,000개씩 육성한다는 목표로 1년간 4차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3년까지 총 186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2014년까지 자활공동체를 2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서울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이외에, 이들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은 사회적 경제라는 통합된 관점 대신, 유형별로 분산된 시각에서 개별 사업체 단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로 분산된 지원사업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육성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런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차원에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육성정책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 첫째,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셋째, 정보 공유·교류 활성화,
넷째 통합관리 행정체계 구축이다.

2. 전략과 추진 방안

1)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계·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계·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연계·연합 전략으로 수익구조 창출 및 연대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연계·연합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사회적 관계망이 사업체의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신규 및 연관사업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계·연합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연계·연합하는 방식과 사업체 간 연계·연합하는 방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연계·연대사업으로 호혜·선순환 지역경제활동 촉진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출발점과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들이 개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가 되어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활동, 즉 영업활동 범위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의 공간적 범위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동 단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회 및 구청장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치구까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연계·연대 모델사업 지원

—개별 사업체 지원방식 이외에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연대하여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역네트워크사업 공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연계·연대 모델사업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네트워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사업체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사업체 간 연계·연합사업으로 상호부조 및 규모의 경제 창출

○ 유사 업종 네트워크와 멘토링 사업 지원

-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에서 외식·식품 제조·판매 업종 사업체 비중이 두 번째로 높으며, 이 업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이 있다. 외식·식품 분야의 경우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 구입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 경우 사업체당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유통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통한 식재료 구입과 홍보를 통해 개별 사업체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구매 유통망 구축사업 실현 가능성을 목적으로 외식·식품 제조·판매 분야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체 대표자 회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매개역할과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외 집수리 및 시설관리 분야 사업체의 경우 공동제고관리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체의 비용 절감 및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사업을 공모하고 타당성이 있는 네트워크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 사업체 설립 초기단계를 지나 경영상 어느 정도 안정단계로 접어든 사회적기업의 경우, 유사 업종으로 진입하는 신규 사업체나 규모가 작은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 공유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락 및 제과제빵사업으로 성공궤도에 진입한 사회적기업이 도시락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등에 제품 개발 등의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선도 사업체 노하우(Know-How) 공유사업 프로젝트 공모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체 간 상호 판매 및 제휴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 확장은 필요하다, 한정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시장 확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 사업체 내부의 물품 · 서비스 판매 · 교환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인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고, 매장 운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을 창출하고 마을기업은 생활협동조합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체 내부의 교환경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체별 영업 관련 정보 수집 및 발신을 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내부 교환경제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은 사업체 역량강화와 마케팅 및 운영 환경 지원이란 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체 역량강화

○ **교육 대상자 확대**

- 서울시는 2011년부터 대학에 위탁하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 위주의 경영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대상자를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관리자로 확대하도록 한다.

- 사회적 경제는 사업체 구성원 내부의 사회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민주적 협동경영체제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교육커리큘럼과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체 대표 · 관리자 이외에 사회적 경제 사업체 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 창업준비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사업체나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 중간지원기관 운영의 다각화

- 서울시가 새로운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예산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중간지원기관은 연구조사지원형, 선도사업체지원형, 네트워크지원형, 교육훈련지원형 등 여러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선도사업체지원형 중간기관이란 특정분야에서 선도적 노하우를 축적한 사업체가 신규 사업체 멘토 역할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 지역자활센터와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 지원기관 역할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인력과 운영예산을 확대하여 광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경영 컨설턴트 대상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컨설턴트를 선발하도록 한다.

(2) 마케팅 및 운영 환경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물품 및 서비스 유형·총량 측정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는 2011년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가이드’를 작성하였고,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촉진 방식은 개별 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측면이 크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가 가능한 물품 및 서비스 유형과 유형별 구매 가능 총량을 조사·측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

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 말 기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67.5%가 아동급식지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음식점(편의점, 제과점 포함)을 이용하고,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은 17.4%, 도시락 배달 이용 아동은 9.3%이다⁴⁹⁾. 한 끼 지원단가가 3,500~4,000원 수준이므로 이 가격으로 아동발육에 필요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은 현재 4개 사회적기업, 1개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자활공동체(사업단 포함)에서 하고 있다.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예산의 80%는 반드시 식자재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단가에 비해 도시락의 질은 좋은 반면, 위탁사업체의 수익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수 및 시설용량으로는 현재 수준 이상의 도시락을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은 선호도가 높고 아동에게 균형이 잡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 확대와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육성을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도시락 배달사업 확대 목표가 설정되면 도시락 사업을 하는 자활공동체와 (예비)사회적기업이 공급용량을 늘리기 위해 HACCP 기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윤리적 소비 홍보와 사회적 경제 사업체 홍보 통합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공에서 발간하는 잡지, 신문,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49) 자료 : 중구지역자활센터, 2011, 결식아동 청소년 급식사업 제안서.

하도록 한다. 자치구는 지역생활 정보지처럼 관내 사회적 경제 사업체 정보 제공 및 통합 홍보를 위한 정보지 제작과 배포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 경제 협동기금 조성 지원

—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이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을 한다면 사업체 위험관리,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지역 또는 업종별 등으로 협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서울시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 시민주주 공모사업

—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시민주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시민주주 공모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신청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의하여 시민주주에게 제공할 사업체 정보(사회적 성과, 재정 상황 등)를 작성하고, 시민주주 모집공모 및 홍보사업을 한다. 서울시가 시민주주 공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3) 정보공유 · 교류 활성화 지원

— 정보공유 · 교류 활성화 지원은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와 자치구, 서울시의 교류 촉진,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활성화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와 공공의 교류 촉진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사회적기업연

합'이 구성되어 있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서울광역자활센터가 2010년 말 서울지역자활협회 운영위탁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이들 지역 네트워크와 자치구, 서울시와의 교류 수준은 미약하다. 예를 들면 2011년 들어 서울 노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역모텔을 만들어가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자치구와의 접촉지점이 아직 없다.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지역네트워크 모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미나 공동주최 등의 방식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활성화

-서울시는 2011년 들어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로 발전시키고,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사업체와 관련된 홈페이지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통합관리 행정체계 구축

(가) 서울시

(1) 사업체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현황과 필요성

-2011년 5월 현재 서울에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가 667개 있으며, 2011년 말에는 약

- 1,000여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이란 양적 육성정책에 초점이 주어졌고, 업무 전담부서인 사회적기업팀(일자리정책과)은 2010년 7월경에 신설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2010년 후반부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이 추가되고,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업무가 서울시로 이전되었다. 사회적기업팀은 단기간에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사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신속한 지원사업 개발 및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신청 사업체 및 지정 사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질적 관리 체계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2011년 들어 자치구별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를 지원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사업체별로 공공지원에 대한 통합정보를 구축하여, 사업체 관리 및 지원 사업 심사 등의 의사결정 시에 통합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011년부터 자치구 공무원들이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실사 및 검토의견서 작성을 하게 되어 해당부서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사 및 검토 의견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별 DB 자료가 구축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방안

- 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업체별 프로파일 DB 구축
 - 서울시(일자리정책과)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업

체별 프로파일 자료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한다.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과와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사업체별 프로파일에 수록될 정보는 공공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시에 활용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 체계 개발사업 결과에 따라 DB 구축 작업을 한다.

-서울시는 DB 구축 및 관리업무,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 포털사이트를 전담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일자리정책과에 배치하도록 한다.

(2) 공공지원 원칙 및 지침 작성

□ 현황과 필요성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이외에 최근 1년 사이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이 공공이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 지원주체별(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또는 사업체별로는 일정 지침하에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자활공동체에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가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사업체 공신력 제고를 이유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⁵⁰⁾. 사업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업체 발전단계(설립초기-성장기-안정유지기 등)에 따라 사업체 유

50)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5개 자활공동체 설문조사에서 ‘공신력 제고’가 48.6%, ‘정부의 더 많은 지원기대’가 8.6%로 나타남(자료 : 경기광역자활센터 · 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설립 사례연구」).

형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 합리화 노력 없이 지원만을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체도 있을 수 있다.

-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어떤 유형의 공공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한 경영전략(공공지원 포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의 합리적 경영전략 수립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의 공공지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원칙과 지침이 필요하다.

□ 방안

- 서울시가 공공지원 통합 지침서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사업체 대표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지원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3)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지원

□ 현황과 필요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육성거점으로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없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치구 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조항은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 21개 자치구 모두 조례상에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은 있다. 그러나 강남구가 2010년 위탁연구로 실시한 ‘강남구

사회적기업 현황조사 및 육성전략 연구'를 제외하고는 자치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없다.

- 지역사회 기반형 사회적 경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 해결, 사회정책과의 대응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육성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 제안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사업비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구의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유도하도록 한다. 예산지원 방식은 매칭펀드 방식이나, 일정액 일괄 지원 또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경제 사업체, 자치구 재정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나) 자치구

(1) 과 단위에서 통합관리

□ 현황과 필요성

-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공동체는 보건복지부로 3개 부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 3개 부처 업무가 서울시로 내려오면서, 행정부서는 2개로 축약되어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경제진흥본부의 일자리정책과가, 자활공동체는 복지건강국의 자활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 2011년부터 자치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고, 마

을기업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사업이 추진되므로 관리 주체는 자치구가 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구청장이 인정하고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다. 2011년부터 자치구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를 관리하는 행정 주체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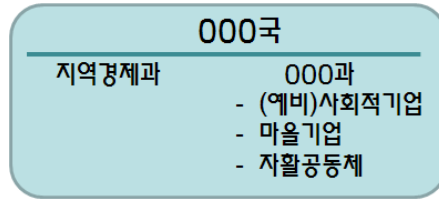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자활공동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이들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에는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이들 사업체를 한 개 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합으로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 과에서 이들 사업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한 개 과에서 모두 담당하는 체제를 갖춘 자치구는 7개 자치구이다. 그리고 동일 국에 속한 두 개 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자치구는 7개 자치구이다. 마지막으로 두 개 국으로 분산된 두 개 과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이다.

□ 방안

① 행정조직체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업무를 1개 과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행정조직을 갖춘다. 그리고 지역경제 담당과와 사회적 경제 사업체 담당과를 동일 국에 배치하도록 한다. 2011년 5월 현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동구의 4개 자치구는 이런 유형의 행정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지원업무 행정체계(안)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심점 역할 강화와 활성화

□ 현황과 필요성

- 2011년 5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1개 자치구는 입법 예정 중이다. 2011년 전반기에는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갖추게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으며, 2010년 4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구는 10개 자치구 이나, 조례를 제정한 나머지 12개 자치구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 마을기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1차 선정심사를 하게 된다. 2011년 마을기업 1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자치구는 22개 자치구이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된 10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마을기업 1차 심사를 하였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구는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된 10개 자치구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자치구는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를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관내 지역자활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방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과 함께 마을기업 관련 심사 및 안건을 다루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지역자활센터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김선기, 2011,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사업 심포지엄』.
- 김진범·정윤희·이승욱·진영환, 2009,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노대명 외, 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 2004. 3. 26,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충방안』, 일자리만들기위원회 회의자료.
- 박원순, 2011,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이매진.
- 박은철, 2007,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의 활성화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혜연·이상현 역, 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아르케(호소우치 노부타카(細内信孝), 2001, 『CHIKI O GENKI NI SURU COMMUNITY BUSINESS, Gyosei Corporation).
- 보건복지부, 2011, 『2011 자활사업안내』.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0, 『2011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계획』.
- 서울특별시,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심의 자료집』.
- 서울특별시, 2011,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10~2014』.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 서하나 역, 2007, 『1% 너머로 보는 지역활성화 I』, 아르케(지바 미쓰유키(千葉光行), 2005, 『1% NO MUKO NI MIERU MACHI-DUKURI』, Gyosei Corporation).
- 신경희, 2010,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경희, 2007,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5.
- 염찬희·엄은희, 2010,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원주(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사업 심포지엄 자료집』.
- 엄형식, 2007,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제1차 사회적기업 열린 포럼 자료집』.
- 정정일 역, 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매진(호소우치 노부타카(細内信孝), 2006, 『MINNA GA SYUYAKU NO COMMUNITY BUSINESS』, Gyosei Corporation).
- 진영환·임정민·정윤희,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참가와 리더십·자립과 파트너십』, 한울(마쓰오 다다스(松尾匡)·니시카와 요시아키(西川芳昭)·이사 아쓰시(伊佐淳), 2005,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戦略編』, Soseisha Publishing Co., Ltd.)
- 진영환·진영효·정윤희,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NPO·시민·자치단체의 참여에서』, 한울(니시카와 요시아키(西川芳昭)·이사 아쓰시(伊佐淳)·마쓰오 다다스(松尾匡), 2005,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事例編』, Soseisha Publishing Co., Ltd.)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자활사업과 지역화 실천』, 나눔의 집.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Cabinet Office,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Defourny, Jacques, 2007, “사회적기업: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http://www.mapocoop.org/town.php> (마포두레생협)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ocialenterprise.go.kr> (사회적기업)

<http://www.sjahwal.or.kr> (서울광역자활센터)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www.ica.coop/ica> (ICA)

<http://www.wonju.go.kr> (원주시청)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영문 요약 (Abstract)



Suggestions to Support a Social Economy in Seoul

Kyung-Hee Shin · Soon-Joo Jung

- Due to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 policy, in the past 2-3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ocial economic businesses, known by various names such as social enterpris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community business, self-sufficient community, etc. In Seoul, as of March, 2011, there are about 700 social economic companies and it seems that they will increase to approximately 1000 by the end of 2011. Even though there is much common ground among social enterpris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community business, self-sufficient community, they are somewhat inefficient and ineffective because of the dispersion of the support policy by the government department.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suggests effic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thods for social economic businesses, that i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it is more desirable to seek the integration of support policies, which are now promoted separately by several departments.
 - Secondly,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fit generating structure and mutual aid economic system through joint strategy among social economic businesses. To make this be accomplishe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for the Seoul city to support a combining project of social economic businesses which are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 Third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ic businesses. For this, it is suggested that

the city of Seoul reinforce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to upgrade the capabilities of companies. Additionally, continuous promotion for ethical consumption and encouragement for priority purchase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eeded for market expansion.

- Fourthly,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change the website of social enterprises to a social economic portal site and to invigorate the website.
- Fifthly, it is necessary to shape a combined DB regarding the social economic businesses to utilize in supporting businesses and management.
- Six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bined public support standards and guidelines regarding social economic business backups.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Concept of a Social Economy

1. The Concept of a Social Economy and Local Community
2. Definition of Business by Types and Emphasis

Chapter 3 Administrational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Related to a Social Economy

1. Administrational Support System
2. Policy and Programs

Chapter 4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conomy in Seoul

1.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Economy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conomy by Types
3. Collaborating Cases of Social Economic Businesses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4. Summary and Implications on Policy

Chapter 5 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시정연 2010-PR-66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발행인 김 상 범

발행일 2011년 5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809-7 9332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